

경상북도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6860호 2024년 8월 12일(월)

경 상 북 도

■ 고 시

-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4-299호) 6

회								
람								

발행인: 경상북도지사 편집: 대변인실

- 지방하천 내성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폐천부지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4-300호) 7
- 지방하천 단양천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하천의 지정(변경),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4-301호) 11

■ 공 고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4-1571호) 22
-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4-1573호) 23
-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4-1583호) 25
-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4-1584호) 28
- 「제32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4-1594호) 30

시 군

■ 고 시

- 경주 도시관리계획(신경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4-166호) 47

-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1-비2호선 개설공사)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문경시 고시 제2024-119호) 113

■ 공 고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영주시 공고 제2024-142호) 117
- 문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문경시 공고 제2024-1261호) 123
- 의성 군계획시설(도로, 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의성군 공고 제2024-1162호) 127
- 영양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영양군 공고 제2024-622호) 140
- 공인 폐기 공고
(성주군 공고 제2024-845호) 143
- 공인 등록 공고
(성주군 공고 제2024-847호) 144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430호) 146

- 하천점용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434호) 147
- 하천점용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436호) 148

■ **지시사항**

- 지사 지시사항 151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4-299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남부건설사 업소 청사 (주3동 별관2동)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공원로 22-55	경상북도 남부건설사 업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2 지정 대상 포함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시설물관리 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 대상임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경상북도 고시 제2024-300호

지방하천 내성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폐천부지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지방하천 내성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른 폐천부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가.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변경없음)			면 적(㎡)		결정(변경·폐지 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 리 (km)	당 초	변 경	
내성 천	지방 하천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1251-1번지선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1059-12번지선 내성천(국가) 합류	75.33	19,316,065	19,310,835 (감5,230)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구역변경에 따른 면적 조정

※ 일부 변경 사항 : No.38+243(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51-4) 우안 제내지 하천
구역 제외

나.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등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 및 하천의 관할지역인
영주시(하천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열람장소 비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054-880-4068), 영주시 하천과(054-639-6903)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 폐천부지 등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방하천 내성천의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발생년월일 (발생사유)
		위 치	지 목	면 적(㎡)				
내성천	지방 하천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47-5	도	5,145	중	455	「하천법」 제84조 및 「하천법」 제85조 규정에 따름	고시일 (하천구역 일부변경)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52	도	68	중	68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51	도	87	중	87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51-3	도	505	중	246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51-4	도	1,459	중	682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50	도	96	중	96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58-1	도	263	중	260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49	도	397	중	397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46-3	도	841	중	709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48	도	96	중	96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47-6	도	1,026	중	977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46-4	도	3,587	중	154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46-1	도	25	중	25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46	도	114	중	46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발생년월일 (발생사유)
		위 치	지 목	면 적(㎡)				
내성천	지방 하천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51-2	도	1,767	중	243	「하천법」 제84조 및 「하천법」 제85조 규정에 따름	고시일 (하천구역 일부변경)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51-1	도	98	중	84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258-2	도	383	중	140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52-1	도	34	중	34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47-4	도	703	중	403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47-3	도	598	중	28		

경상북도 고시 제2024-301호

**지방하천 단양천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하천의
지정(변경),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지방하천 단양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른 하천의 지정(변경),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목적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지방하천 단양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관된 개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천의 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환경 보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자원 종합 개발 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 현황

수 계	하천명	유역 면적 (km ²)	연평균 강우량 (mm)	수자원 총 량 (백만 m ³)	유출량(백만 m ³)			손실량 (백만 m ³)
					홍수시	평상시	계	
한강	단양천	95.28	1,267.97	120.81	49.34	18.98	68.32	52.49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면적 (km ²)	계획규모 (년)	기본 홍수량 (m ³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³ /s)	하도분담 홍수량 (m ³ /s)	계획 홍수량 (m ³ /s)
단양천	단양천 종점	95.28	100년	634	-	634	634
	세월교 지점	82.10	〃	634	-	634	634
	도락소하천 합류전	75.83	〃	608	-	608	608
	회산소하천 합류전	70.91	〃	579	-	579	579
	산안소하천 합류전	63.09	〃	565	-	565	565
	궁기소하천 합류전	57.27	〃	545	-	545	545
	모여소하천 합류전	46.65	〃	426	-	426	426
	명전소하천 합류전	27.78	〃	262	-	262	262
	산막소하천 합류전	12.94	〃	153	-	153	153
	과업시점	2.36	〃	38	-	38	38

라.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하천명	주요지점명	기본홍수량 (m ³ /sec)	계획홍수량 (m ³ /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단양천	단양천 종점	634	634	146.23	57
	세월교 지점	634	634	213.77	45
	도락소하천 합류전	608	608	220.78	70
	회산소하천 합류전	579	579	226.25	38
	산안소하천 합류전	565	565	286.27	39
	궁기소하천 합류전	545	545	309.72	68
	모여소하천 합류전	426	426	310.16	57
	명전소하천 합류전	262	262	325.06	36
	산막소하천 합류전	153	153	404.09	24
	과업시점	38	38	657.96	19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하천명	구간 또는 측점	안별	지구 구분	연장(km)	비고
단양천	No.0+000 ~ No.2+070	좌안	보전(일반보전)	2.07	
	No.2+070 ~ No.3+730	좌안	친수	1.66	
	No.3+730 ~ No.5+650	좌안	보전(일반보전)	1.92	
	No.5+650 ~ No.7+979	좌안	복원	2.33	
	No.7+979 ~ No.12+000	좌안	보전(일반보전)	4.02	
	No.12+000 ~ No.13+979	좌안	복원	1.98	
	No.13+979 ~ No.16+450	좌안	보전(일반보전)	2.47	
	No.16+450 ~ No.18+344	좌안	복원	1.89	
	No.18+344 ~ No.20+405	좌안	보전(일반보전)	2.06	
	No.0+000 ~ No.0+520	우안	보전(일반보전)	0.52	
	No.0+520 ~ No.9+930	우안	친수	0.41	
	No.0+930 ~ No.1+700	우안	보전(일반보전)	0.77	
	No.1+700 ~ No.3+000	우안	친수	1.30	
	No.3+000 ~ No.4+950	우안	보전(일반보전)	1.95	
	No.4+950 ~ No.7+979	우안	복원	3.03	
	No.7+979 ~ No.12+000	우안	보전(일반보전)	4.02	
	No.12+000 ~ No.14+300	우안	복원	2.30	
	No.14+300 ~ No.16+450	우안	보전(일반보전)	2.15	
No.16+450 ~ No.18+500	우안	복원	2.05		
No.18+500 ~ No.20+405	우안	보전(일반보전)	1.91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 및 하천의 관할지역인 문경시(안전재난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054-880-4068), 문경시 안전재난과(☎054-550-6538)

2.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 지정 (변경) 고시합니다.

가.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 변경 사항

하천명	하천 등급	당초 변경	구 간			변경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단양천	지방 하천	당초	충북 단양군 단성면 별천리 121-1번지	충북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한강(국가)합류점	12.01	기점 조정에 따른하천연장 변경
		변경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1-7	단양군 대강면 죽령천(지방) 합류점	20.41	

나. 지정·변경일 : 고시일과 같음

3.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가.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하천 명칭	하천 등급	결정 (변경)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단양 천	지방 하천	결정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1326 (No20+40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25-5 (No12+096)	8.31	199,646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 기본계획수립(변경)

나. 하천구역 지번 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1-1	답	561	354	경상북도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12-2	도	318	44	문경시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12-4	도	266	92	문경시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154-2	답	655	306	경상북도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167-3	답	226	60	신*군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538-1 동화해오름타운 109-1101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편입면적(m ²)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167-4	답	1,557	1,265	신*균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538-1 동화해오름타운 109-1101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184-1	도	261	146	문경시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186-1	도	218	218	문경시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191-1	천	612	96	김*걸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70-4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191-3	답	17,964	307	국 (환경부)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191-30	답	473	473	진*일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오목길2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191-31	천	393	7	진*일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오목길2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191-73	천	8,847	134	김*걸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70-4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25-5	천	176	45	문경시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8-2	도	254	112	문경시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901-11	도	2,578	400	국 (농림축산식품부)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901-2	도	1,083	1,083	국 (농림축산식품부)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901-3	도	1,010	19	국 (농림축산식품부)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901-5	도	5,249	1,371	국 (농림축산식품부)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901-8	도	1,166	3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902	천	27,841	9,441	국 (국토교통부)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903	구	3,162	166	국 (농림축산식품부)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903-2	구	13,495	120	국 (농림축산식품부)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905	도	66	66	국 (국토교통부)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908	도	46	16	국 (국토교통부)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992	천	25,828	21,642	국 (국토교통부)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산29-1	임	14,536,796	91,665	국 (산림청)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산29-81	도	566	145	국 (국토교통부)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산75	천	33,285	28,295	국 (국토교통부)	
좌5	소 계						158,448		
좌6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1326	답	681	48	김*필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361, 204동 405호(산곡동, 한화아파트)
좌6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산414-1	임	3,542,704	17,185	국 (산림청)	
좌6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산448	구	71,771	23,934	국 (농수산부)	
좌6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산449	구	4,532	31	국 (농림축산식품부)	
좌6	소 계						41,198		

다.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등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는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 및 하천의 관할 지역

인 문경시(안전재난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열람장소 비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054-880-4068), 문경시 안전재난과(☎054-550-6538)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하천명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m ²)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단양천	지방 하천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191-73 (NO.13+260)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191-1 (NO.13+180)	0.08	1,809	· 결정일 : 고시일 · 결정사유 : 하천 기본계획수립(변경)

나. 홍수관리구역 지번조사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191-1	천	612	513	김*결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70-4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191-73	전	8,847	1,223	김*결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동무지길 70-4
좌5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902	천	27,841	73	국 (국토교통부)	
소 계							1,809		

다.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는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 및 하천의 관할지역인 문경시(안전재난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열람장소 비치)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054-880-4068), 문경시 안전재난과(☎054-550-6538)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공고 제2024 - 1571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 등록내용 -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설계업(2종) 경북 제2024- 6470000-85-13 -00005호	문향전기설계감리 (195-62-00704)	신상철	경북 영주시 영주동 470-297
전문감리업 경북 제2024- 6470000-86-22 -00007호			

※ 등록일자 : 2024년 8월 7일. 끝.

경상북도 공고 제2024- 1573호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4. 8. 12. ~ 2024. 8. 26.(15일간)

2. 공고내용

가.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처분업종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내용
(주)제스코 (박진성)	건축공사업 (16-1055)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 10 협화타운상가 201호(옥산동)	과태료 (금120,000원)
(주)삼현종합건설 (엄진용)	토목공사업 (16-0634)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교촌길 9-13, 2층	과태료 (금120,000원)

나. 처분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다.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라. 처분일자 : 2024 7. 23.

3. 안내사항

가. 귀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 처분의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kiscon.net>) 및 경북도청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
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과
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도(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북도청 도시계획과(054-880-3915)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4-1583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4. 8. 12. ~ 2024. 8. 26.(15일간)

2. 공고내용

가.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소 재 지	행정처분
주식회사고려건설 (조정제)	토목건축공사업 (16-0360)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2로 36-13	영업정지(5개월) (2024.08.26.-2025.01.25.)

업 체 명 (대 표 자)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소 재 지	행정처분
주식회사유성건설 (김재형,남동강)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6-0005) 토목건축공사업 (977) 조경공사업 (60012)	경상북도 경산시 펜타힐즈2로 9, 801호 (중산동, 펜타힐즈엠타워)	영업정지5개월 (2024.08.26.-2025.01.25.) 영업정지(5개월) (2024.08.26.-2025.01.25.) 영업정지(6개월) (2024.08.26.-2025.02.25.)

나. 처분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다.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라. 처분일자 : 2024. 7. 29.

3. 귀 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처분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외 본 처분 이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신규계약 체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4-1584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4. 8. 12. ~ 2024. 8. 26.(15일간)

2. 공고내용

가.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소 재 지	행정처분
주식회사제이에이치중 합건설 (박진홍)	건축공사업 (08-003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87, 406호	영업정지(1개월) (2024.8.26.~2024.9.25.)

나. 처분사유 : 시정명령불이행

다.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라. 처분일자 : 2024. 7. 29.

3. 귀 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처분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외 본 처분 이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신규계약 체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4 - 1594호

『제32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 공고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제32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을 시상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12.

경상북도지사 · 매일신문사 사장

1. 부문별 선정 업체수

구 분	종 합 대 상	경영혁신 부문대상	기술개발 부문대상	고용창출 부문대상	여성기업 부문대상	우수상
7개 업체	1	1	1	1	1	2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추천·신청 대상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 및 각 부문별 추

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공장이 모두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함.

** 매출액(23년말) : [제조] 3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 20억원 이상

※ 신청가능 업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제조업(C1~C33)
- 지식기반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소프트웨어개발 및공급업(J582), 전기통신업(J61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전문디자인업(M732)

○ 부문별 추천기준

- (경영혁신) 최근 2년간('22~'23)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3년 매출액이 전년('22)대비 5%이상 증가한 기업
- (기술개발) 최근 2년간 연구개발 평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 (고용창출) 전년대비('22→'23)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또는 10% 이상 증원한 업체
- (여성기업) 기업대표자가 여성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첨부

○ 제외대상

- 최근 3년('21.~'23.) 이내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 이전 수상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복수상 가능하나 기수상기업의 수상등급이 이전 수상에 비해 동격 이하인 경우 수상 제외

- '23년 말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미충족 기업
- 당기 순손실 발생 기업 및 직전년도('23년)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업체('21.~'23.)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67호, 제2023-622호에 공표된 업체
-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업체('21. 9. 7. ~ '24. 9. 6.)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3년간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21. 9. 7. ~ '24. 9. 6.)
- 추천일 현재 세금체납(국세, 지방세)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22.~'23.)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기타 사항은 도지사표창 업무지침에 따름

3. 추천·신청권자

- 신청자 : 기업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함
- 추천자 : 시·군,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

*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

- ①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
 ③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 ④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
 ⑤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⑥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⑦ 도내 지역별 상공회의소 회장, ⑧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
 ⑨ (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⑩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⑪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장, ⑫ 경 북 ·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4. 8. 13.(화) ~ 9. 6.(금)

○ 접수방법 : 추천기관을 통한 공문 접수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 추천기관에서 경상북도(기업지원과)로 추천

○ 접 수 처 : 경북도청 기업지원과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추천기관 공문은 신청기간 내 경상북도로 접수되어야 하며, 관련서류 원본은 우편(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함) 또는 방문제출하고, 해당 파일 스캔본을 전자메일(gmlwns164@korea.kr)로 제출해야함.

※ 스캔파일은 “[기업명] 1. 제32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pdf”, “[기업명] 2. 공적요약 및 기업현황.pdf”와 같이 “[기업명] 번호. 제목.pdf”로 저장해야하며, 붙임 1의 ‘번호’와 ‘제목’이 일치해야 함.

5. 추천·신청서류

- 제출서류목록 1부 [붙임 1]
-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 1부 [붙임 2]
- 공적요약 및 기업현황 1부 [붙임 3]
- 대표자 이력 및 회사연혁 1부 [붙임 4]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붙임 5]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사본 가능)
-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가능)
- 기업소개 자료(팸플릿, 브로슈어 등)
- 기업체 전경 및 내부설비 현황 사진(A4 5쪽 이내)
- 기업체 산업재해율확인서(2022.1.1.~2023.12.31.) 1부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 최근 2년간('22년, '23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첨부 (공인회계사 확인 또는 홈택스 발행분)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해당 증명서 유효기간이 신청마감일 이후여야 함
- 수출실적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발급분

※ 은행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음

○ 기술개발 증빙 서류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권), 국내외 품질인증, 기술개발연구조직, 공동연구 참여 실적 등

○ 직원복지 증빙 서류(참고용/현장실사 및 경영주 면담을 통해 평가)

- ☞ 기숙사 운영, 자기개발 수강료 지원, 학자금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아이동반 사무실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입 등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2년, '23년) 각 1부

○ 지역사회 기여 증빙 서류('22년~'24년)

- ☞ 사회복지시설 자매결연, 기부(호우·태풍 등 재난시 성금 전달), 봉사활동 등

○ 경상북도 인증 현황

- ☞ Pride기업, 실라리안, 향토뿌리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타기업 등

○ 기타 기업평가 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추천(신청)서 및 서식은 도청 홈페이지(<http://www.gb.go.kr>)

‘도정소식 ⇒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

6. 심사 및 평가

- 심사기준 : 건실도, 재무현황, 생산성, 기술수준, 지역경제 기여도 등 종합평가
- 심사방법 및 절차

- 서류심사 :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의거 대상 적합여부 등 평가
 - ※ 4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시상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현장실사 : CEO 경영전략 및 경영능력, 직원 복지(출산·육아), 업체 환경 등 확인
- 최종심사 :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7. 수상업체 혜택(수여일로부터 3년간)

-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원(일반 3억 → 우대 5억)
- SGI서울보증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확대
- 「경상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1조에 의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홍보영상 제작(도청 내 기업홍보용 미디어월 상영) 및 매일신문 게재를 통한 수
상업체 홍보
-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우대 협조 등
 - ※ 예산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수상업체 혜택은 변경될 수 있음

8. 시상시기 : 2024. 12월 예정(최종 선정 후 수상업체 통보)

9. 문 의 처 : 경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74)

10. 기 타

- 추천기관은 최대 3개 기업을 추천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최대 2개 분야에 응모할 수 있음.
-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자료에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령 및 경상북도 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함.

붙임 1. 제출서류목록 1부.

2.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 서식 1부.

3. 공적요약 및 기업현황 서식 1부.

4. 대표자 이력 및 회사연혁 서식 1부.

5.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식 1부.

6. 평가항목 1부.

7.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현황(2021~2023) 1부.

[붙임 1]

제출서류 목록(기업명 기재)

번호	분야	제목	제출 여부	비고
1	-	제32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붙임 2
2	기업 현황	공적요약 및 기업현황	<input type="checkbox"/>	붙임 3
3		대표자 이력 및 회사연혁	<input type="checkbox"/>	붙임 4
4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붙임 5
5		중소기업확인서	<input type="checkbox"/>	
6		법인등기부등본	<input type="checkbox"/>	
7		사업자등록증	<input type="checkbox"/>	
8		기업소개 자료(팸플릿, 브로슈어 등)	<input type="checkbox"/>	
9		기업체 전경 및 내부설비 현황 사진(A4 5쪽 이내)	<input type="checkbox"/>	
10	결격 사유	산업재해율확인서(22.1.1.~23.12.31.)	<input type="checkbox"/>	
11		결산재무제표(22, 23년)	<input type="checkbox"/>	
12		국세 납세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13		지방세 납세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14	경영 혁신	수출실적증명서(22, 23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년 <input type="checkbox"/> 23년
15	기술 개발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권)	<input type="checkbox"/>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건 건 건 건
16		국내외 품질 인증 현황 서류	<input type="checkbox"/>	해외 국내 건 건
17		기술개발 연구조직 서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증서)	<input type="checkbox"/>	
18		공동연구 증빙 서류	<input type="checkbox"/>	
19	고용 창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2, 23년)	<input type="checkbox"/>	
20		지역사회 기여 증빙 서류	<input type="checkbox"/>	건
21	가점	ERP 시스템 구입 내역	<input type="checkbox"/>	
22		스마트 팩토리 추진 내역	<input type="checkbox"/>	
23		여성기업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24		장애인기업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25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input type="checkbox"/>	
26		경상북도인증기업	<input type="checkbox"/>	건
27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기업)	<input type="checkbox"/>	건
28	기타	기타 실적 등 관련 자료	<input type="checkbox"/>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 상기 구분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제출해야 함.

붙임 3]

공적요약 및 기업현황

공 적 요 약	
공적 사항	
특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랑거리(추천사유)

기 업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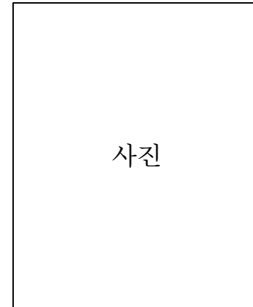
품질수준 및 기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조직(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술인력, 기술개발노력,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산업재산권 및 규격인증 등) 등 ○ 품질관리부서, 품질매뉴얼, 제안활동 등 품질경영수준
사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현황, 시장특성, 주요거래처, 품질수준, 경쟁업체 현황 등 ○ 해외영업망 구축현황
사회봉사 및 복지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봉사활동, 종업원 복지후생 등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이념, 경영자 및 직원 경영·기술 교육현황 등

[붙임 4]

대표자 이력 및 회사연혁

대표자 이력

- 성 명 :
- 생년월일 :
- 본 적 :
- 주 소 :
- 학 력
 - 1999. 2. 000고등학교 졸업
 - 2000. 3. 000대학교 000학과 졸업



대표자 경력

- 1990. 0. 000회사 입사
- 1991. 0.
- 1992. 0.

회사 연혁

- 1990. 0. 000회사 설립
- 1991. 0. 000사로 상호변경
- 1992. 0. 000 면허취득

회사 수상경력

- 1990. 0. 00시장 표창
- 1991. 0.
- 1992. 0.

[붙임 5]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상 호 :
- 주 소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제32회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 기업인으로서 포상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적심사, 포상 결정·취소시 관보 게재, 포상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등의 조회에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2024. . .

상기자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붙임 6]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평가항목	배 점	평가내용 및 배점
합 계	100	※ 가점 별도 부여
생산성향상	30	매출액 증가율(5), 당기순이익률(5), 영업이익률(5), 부채비율(5), 매출액(5), 기업업력(5)
경영혁신	25	수출실적비율(5), 수출실적성장률(5), 경영성과(6), 경영전략/조직관리(9)
기술개발	25	기술개발투자율(8), 산업재산권 보유(8), 품질인증(5), 기술개발연구조직(2), 공동연구(2)
고용창출	20	직원복지(5), 지역일자리투자(12), 지역사회기여(3)

● 가점사항

평가항목	배 점	평가내용 및 배점
기타(가점)	10	기업정보화구축(1), 장애인기업(1), 여성기업(1), 가족친화인증기업(2)*, 경상북도 인증기업(3), 중소벤처기업부 인증(메인비즈/이노비즈/벤처)기업(2) * 신설

[붙임 7]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현황(2021~2023)

수상연도	구분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생 산 품 목	
2023	종합대상	(주)부성티에프시	조상형	구미	기능성 섬유, 타이어코드	
	부 문 대 상	경영혁신	(주)제이엔에스	김병수	칠곡	어저스트슬리브, 벨로우즈파이프
		기술개발	(주)네오테크	이준명	김천	자동차 튜닝용 현가, 제동장치
		여성기업	정우하이텍(주)	정혜순	영천	자동차카울크로스바, 메인파이트
	우수상	(주)태산	허광욱	영천	양금	
		(주)에이치에너지	함일한	포항	모뎀, 김태양, 전기구독	
		(주)디에스에스	문주연	김천	플라스틱 밴드	
2022	종합대상	(주)대원GSI	서보성	칠곡	색채선별기	
	부 문 대 상	경영혁신	(주)코마테크놀로지	박성훈	구미	반도체 소모성부품
		기술개발	브이엔에스	배상용	구미	방산시험 및 반도체검사장비 등
		고용창출	화일산기(주)	박의룡	포항	벨트컨베이어, 기계정비
		여성기업	(주)유일코퍼레이션	이인숙	성주	홈퍼니싱 및 산업자재 원단
	우수상	클라임코리아(주)	홍주표	문경	인공암벽, 인공홀드	
		태성전기(주)	신국수	구미	copper 등 냉동기기 부품	
2021	종합대상	영창케미칼(주)	이성일	성주	감광재료, 전자재료	
	부 문 대 상	경영혁신	(주)키큰아이	김영식	구미	핫도그, 치즈볼, 미니붕어빵
		기술개발	제일산기(주)	박상규	포항	브리켓팅 머신
		고용창출	(주)보백씨엔에스	서동조	구미	film, tape, insulation, Mica
		여성기업	(주)키즈마루	손미숙	성주	더치커피
	우수상	킹덤플랜트협동조합	김한동	안동	커피원두, 칩출차, 커피백, 과일청	
		(주)참미푸드	김정훈	고령	즉석조리식품	
		(주)성우플라텍	성종호	칠곡	자동차용 조명장치	
(주)이젠테크		손정희	포항	크레인, 호이스트, 상하수도 시설		



시 군

고 시

경주시 고시 제2024 - 166호

경주 도시관리계획(신경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의 신경주역세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경 주 시 장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합 계		532,449.8	100.0
주거 지역	소 계	365,156.1	68.6
	제1종일반주거지역	44,796.6	8.4
	제2종일반주거지역	292,102.4	54.9
	준주거지역	28,257.1	5.3
상업 지역	소 계	23,519.5	4.4
	일반상업지역	23,519.5	4.4
녹지 지역	소 계	143,774.2	27.0
	자연녹지지역	143,774.2	27.0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철도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계	1개소	75.8		
기정	역1	역세권1 철도시설	화천리 2719-1	75.8	경북고 제2022-424호 (22.12.29)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m ²)	비고
기정	역1	신경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	532,449.8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비고	
합 계				25	5,473	96,831.0 (97,369.0)		
일반 도로	소 계			24	5,455	96,759.1 (97,297.1)		
	대 로	소 계		1	646	16,356.8 (16,826.8)		
		3류	25~28	1	646	16,356.8 (16,826.8)		
	중 로	소 계		7	2,881	63,984.9		
		1류	20~26	5	2,555	57,422.2		
		2류	15	2	326	6,562.7		
		3류	-	-	-	-		
	소 로	소 계		-	16	1,928	16,417.4 (16,485.4)	
		1류	10	2	722	7,548.1		
		2류	8	8	851	6,960.5 (7,028.5)		
		3류	1.0~7.7	6	355	1,908.8		
	보행자 전용도로	소 계			1	18	71.9	
		소 로	3류	4	1	18	71.9	

주 : ()는 하천과 중복되는 부분을 포함한 면적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역1	25~28	보조간선 도로	646	중로 1-21	화천리 2577-1	일반 도로		경북고 제2016-215호 (16.8.22)	
기정	중로	1	21	20~26	집산도로	983 (899)	화천리 1001-1	화천리 301-1	일반 도로		경주고제64호 (07.9.17)	
기정	중로	2	역1	19~23	보조간선 도로	277	화천리 1296-4	중로 1-21	일반 도로		경북고 제2016-215호 (16.8.22)	
기정	중로	1	역2	20~26	집산도로	409 (356)	대로 3-역1	중로 1-21	일반 도로		경북고 제2016-215호 (16.8.22)	
기정	중로	1	역3	20~26	집산도로	976	중로 1-21	중로 1-21	일반 도로		경북고 제2016-215호 (16.8.22)	
기정	중로	1	역4	20	집산도로	319	대로 3-역1	중로 1-21	일반 도로		경북고 제2019-258호 (19.9.5)	
기정	중로	1	역5	23	국지도로	5	대로 3-역1	소로 3-역3	일반 도로		경북고 제2019-258호 (19.9.5)	
기정	중로	2	역3	15	국지도로	49	중로 1-역3	소로 1-역2	일반 도로		경북고 제2016-215호 (16.8.22)	
기정	소로	1	역1	10	국지도로	169	중로 1-역3	화천리 600-2	일반 도로		경북고 제2019-258호 (19.9.5)	
기정	소로	1	역2	10	국지도로	553	중로 1-역3	중로 2-역3	일반 도로		경북고 제2019-258호 (19.9.5)	
기정	소로	2	역1	8	국지도로	83	중로 1-역3	소로 1-역2	일반 도로		경북고 제2019-258호 (19.9.5)	
기정	소로	2	역2	8	국지도로	24	소로 1-역2	화천리 1287-1	일반 도로		경북고 제2019-258호 (19.9.5)	
기정	소로	2	역3	8	국지도로	115	소로 1-역2	소로 2-역1	일반 도로		경북고 제2019-258호 (19.9.5)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역4	8	국지도로	181	소로 1-역2	소로 2-역1	일반 도로		경북도 제2019-258호 (19.9.5)	
기정	소로	2	역5	8	국지도로	77	소로 1-역2	소로 2-역4	일반 도로		경북도 제2019-258호 (19.9.5)	
기정	소로	2	역6	8	국지도로	108	소로 1-역2	소로 2-역4	일반 도로		경북도 제2019-258호 (19.9.5)	
기정	소로	2	역7	8	국지도로	128	소로 1-역2	소로 2-역4	일반 도로		경북도 제2019-258호 (19.9.5)	
기정	소로	2	역8	8	국지도로	135	소로 1-역2	소로 2-역4	일반 도로		경북도 제2019-258호 (19.9.5)	
기정	소로	3	역1	6	국지도로	104	소로 1-역1	화천리 583-5	일반 도로		경북도 제2019-258호 (19.9.5)	
기정	소로	3	역2	7.7	국지도로	12	소로 1-역1	화천리 2623	일반 도로		경북도 제2019-258호 (19.9.5)	
기정	소로	3	역3	5	국지도로	159	화천리 2731-2	화천리 2731-3	일반 도로		경북도 제2019-258호 (19.9.5)	
기정	소로	3	역4	4-5	국지도로	38	화천리 971-1	전기공급설비 역2	일반 도로		경북도 제2019-258호 (19.9.5)	
기정	소로	3	역5	4	특수도로	18	중로 1-역3	소로 2-역4	보행자 전용 도로		경북도 제2019-258호 (19.9.5)	
기정	소로	3	역6	3	국지도로	33	소로1-역2	화천리 산225-21	일반 도로		경북도 제2022-202호 (22.7.4)	
기정	소로	3	역7	1-3	국지도로	9	화천리 2577-109	화천리 2728-1	일반 도로		경북도 제2022-424호 (22.12.29)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통과하는 도로의 구역 내 연장임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계		5개소	10,744.5		
기정	역1	역세권1 주차장	화천리 2706-3	1,742.5	경북고 제2019-258호 (19.9.5)	
기정	역2	역세권2 주차장	화천리 2714-5	1,242.0	경북고 제2019-258호 (19.9.5)	
기정	역3	역세권3 주차장	화천리 2722-1	1,622.5	경북고 제2019-258호 (19.9.5)	
기정	역4	역세권4 주차장	화천리 2726-4	2,080.0	경북고 제2019-258호 (19.9.5)	
기정	역5	역세권5 주차장	화천리 2699-4	4,057.5	경북고 제2021-33호 (21.2.4)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계			3개소	55,997.4		
기정	역1	역세권1 역사공원	역사공원	화천리 2699-3	35,771.5	경북고 제2016-215호 (16.8.22)	
기정	역1	역세권1 근린공원	근린공원	화천리 2707-2일원	18,693.2	경북고 제2016-215호 (16.8.22)	
기정	역1	역세권1 소공원	소공원	화천리 2715	1,532.7	경북고 제2019-258호 (19.9.5)	

나)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계			11개소	57,982.5		
기정	1	고속철도변 녹 지	완충녹지	화천구역계	19,231.0 (-)	경북고 제2002-68호 (02.4.6)	
기정	완1	역세권1 완충녹지	완충녹지	화천리 2695-1일원	10,576.2	경북고 제2019-258호 (19.9.5)	
기정	완2	역세권2 완충녹지	완충녹지	화천리 2707-1일원	4,913.8	경북고 제2016-215호 (16.8.22)	
기정	완3	역세권3 완충녹지	완충녹지	화천리 2719일원	14,011.3	경북고 제2016-215호 (16.8.22)	
기정	완4	역세권4 완충녹지	완충녹지	화천리 2699-2일원	9,130.4	경북고 제2016-215호 (16.8.22)	
기정	경1	역세권1 경관녹지	경관녹지	화천리 2723-2일원	5,947.4	경북고 제2016-215호 (16.8.22)	
기정	경2	역세권2 경관녹지	경관녹지	화천리 2724	4,663.2	경북고 제2016-215호 (16.8.22)	
기정	경3	역세권3 경관녹지	경관녹지	화천리 2730-1일원	4,501.8	경북고 제2016-215호 (16.8.22)	
기정	경4	역세권4 경관녹지	경관녹지	화천리 2728-1일원	2,176.4	경북고 제2016-215호 (16.8.22)	
기정	경5	역세권5 경관녹지	경관녹지	화천리 2729일원	534.0	경북고 제2016-215호 (16.8.22)	
기정	연1	역세권1 연결녹지	연결녹지	화천리 2706-4	1,528.0	경북고 제2016-215호 (16.8.22)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통과하는 녹지의 구역 내 면적임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계		2개소	800.6		
기정	역1	역세권1 전기공급설비	화천리 2695	489.7	경북고 제2019-258호 (19.9.5)	
기정	역2	역세권2 전기공급설비	화천리 2729-1	310.9	경북고 제2016-215호 (16.8.22)	

나)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계		1개소	71.3		
기정	역1	역세권1 수도공급설비	화천리 2707-3	71.3	경북고 제2022-424호 (22.12.29)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계			1개소	13,499.8		
기정	역1	역세권1 초등학교	초등학교	화천리 2702	13,499.8	경북고 제2019-258호 (19.9.5)	

나)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계			1개소	1,162.1		
기정	역1	역세권1 공공청사	공공청사	화천리 2706-1	1,162.1	경북고 제2016-215호 (16.8.22)	

5) 방재시설

가) 하천

■ 하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계			2개소			-	-	2,870.7 (2,332.7)		
기정	역1	적지천	소하천	화천리 1254-3번지 일원	화천리 1292번지 일원	-	0.500	7	2,091.7 (2,023.7)	경북고 제2016-215호 (16.8.22)	
기정	역2	신흥천	소하천	화천리 781일원	화천리 779일원	-	0.920	20	779.0 (309.0)	경북고 제2016-215호 (16.8.22)	

주 : ()는 도로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면적임

나)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계			1개소	1,324.0		
기정	역1	역세권1 저류지	저류지	화천리 2697-2	1,324.0	경북고 제2019-258호 (19.9.5)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26,065.1	98필지	26,065.1	획지분할 및 합병은 분양계획에 따름
A1	A1	5,410.5	화천리 2709-1	326.0	
			화천리 2709-2	276.7	
			화천리 2709-3	271.5	
			화천리 2709-4	266.2	
			화천리 2709-5	261.0	
			화천리 2709-6	255.9	
			화천리 2709-7	250.5	
			화천리 2709-8	245.4	
			화천리 2709-9	240.5	
			화천리 2709-10	251.2	
			화천리 2709-11	252.2	
			화천리 2709-12	243.9	
			화천리 2709-13	251.9	
			화천리 2709-14	260.1	
			화천리 2709-15	268.1	
			화천리 2709-16	275.7	
			화천리 2709-17	283.8	
			화천리 2709-18	292.2	
			화천리 2709-19	300.7	
			화천리 2709-20	337.0	
A2	A2	5,199.6	화천리 2710-1	327.5	
			화천리 2710-2	287.5	
			화천리 2710-3	280.7	
			화천리 2710-4	273.9	
			화천리 2710-5	267.1	
			화천리 2710-6	260.2	
			화천리 2710-7	253.3	
			화천리 2710-8	246.7	
			화천리 2710-9	239.8	
			화천리 2710-10	221.2	
			화천리 2710-11	227.9	
			화천리 2710-12	237.7	
			화천리 2710-13	243.8	
			화천리 2710-14	249.6	
			화천리 2710-15	255.7	
			화천리 2710-16	261.6	
			화천리 2710-17	267.5	
			화천리 2710-18	273.5	
화천리 2710-19	279.4				
화천리 2710-20	245.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3	A3	4,715.9	화천리 2713-1	388.2	
			화천리 2713-2	295.5	
			화천리 2713-3	286.4	
			화천리 2713-4	277.6	
			화천리 2713-5	269.0	
			화천리 2713-6	259.9	
			화천리 2713-7	251.5	
			화천리 2713-8	242.8	
			화천리 2713-9	221.2	
			화천리 2713-10	225.1	
			화천리 2713-11	240.2	
			화천리 2713-12	246.8	
			화천리 2713-13	252.9	
			화천리 2713-14	259.6	
			화천리 2713-15	265.9	
			화천리 2713-16	272.4	
			화천리 2713-17	460.9	
A4	A4	1,376.1	화천리 2711-1	307.6	획지분할 및 합병은 분양계획에 따름
			화천리 2711-2	269.1	
			화천리 2711-3	271.1	
			화천리 2711-4	266.1	
			화천리 2711-5	262.2	
A5	A5	1,679.6	화천리 2712-1	240.4	
			화천리 2712-2	240.3	
			화천리 2712-3	241.1	
			화천리 2712-4	240.8	
			화천리 2712-5	240.7	
			화천리 2712-6	241.1	
			화천리 2712-7	235.2	
A6	A6	2,281.8	화천리 2714-1	400.5	
			화천리 2714-2	313.5	
			화천리 2714-3	297.9	
			화천리 2714-4	282.5	
			화천리 2714-6	281.9	
			화천리 2714-7	295.6	
			화천리 2714-8	409.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7	A7	3,137.5	화천리 2716-1	251.8	획지분할 및 합병은 분양계획에 따름
			화천리 2716-2	254.2	
			화천리 2716-3	292.5	
			화천리 2716-4	345.0	
			화천리 2716-5	265.3	
			화천리 2716-6	218.0	
			화천리 2716-7	188.8	
			화천리 2716-8	146.7	
			화천리 2716-9	145.4	
			화천리 2716-10	200.6	
			화천리 2716-11	237.3	
			화천리 2716-12	288.4	
			화천리 2716-13	303.5	
A8	A8	2,264.1	화천리 2717-1	220.0	
			화천리 2717-2	233.1	
			화천리 2717-3	233.1	
			화천리 2717-4	233.3	
			화천리 2717-5	233.4	
			화천리 2717-6	233.4	
			화천리 2717-7	270.1	
			화천리 2717-8	301.9	
			화천리 2717-9	305.8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224,714.6	7필지	224,714.6	획지분할 및 합병은 분양계획에 따름
B1	B1	24,315.9	화천리 2707	24,315.9	
B2	B2	42,584.4	화천리 2701	42,584.4	
B3	B3-1	32,822.1	화천리 2699-1	32,822.1	
	B3-2	32,737.4	화천리 2699	32,737.4	
B4	B4	50,355.2	화천리 2697	50,355.2	
B5	B5	18,084.0	화천리 2696	18,084.0	
B6	B6	23,815.6	화천리 2703	23,815.6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4,494.4	8필지	4,494.4	획지분할 및 합병은 분양계획에 따름
C1	C1	1,443.9	화천리 2730	1,443.9	
C2	C2	3,050.5	화천리 2722-2	439.5	
			화천리 2722-3	454.0	
			화천리 2722-4	465.0	
			화천리 2722-5	434.0	
			화천리 2722-6	419.0	
			화천리 2722-7	427.0	
			화천리 2722-8	412.0	

4) 상업·업무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획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면적(㎡)				
					기정	변경				
합계			12,017.8		7필지	12,017.8		획지분할 및 합병은 분양계획에 따름		
D1	D1	D1-1	5,896.7	1,133.3	화천리 2726-1	1,989.1	1,133.3			
		D1-5		855.8			855.8			
		D1-2		964.1	화천리 2726-2	1,928.3	964.1			
		D1-4		964.2			964.2			
		D1-3		1,979.3	화천리 2726-3	1,979.3	-			
D2	D2	D2-1	4,957.4	853.2	화천리 2726-5	1,831.0	853.2			
		D2-4		977.8			977.8			
		D2-2		770.0	화천리 2726-6	1,641.1	770.0			
		D2-5		871.1			871.1			
		D2-3		696.6			화천리 2726-7		1,485.3	696.6
		D2-6		788.7						788.7
D3	D3	-	1,163.7	-	화천리 2706-2	1,163.7	-			

5)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23,798.2	1필지	23,798.2	획지분할 및 합병은 분양계획에 따름
G1	G1	23,798.2	화천리 2728	23,798.2	

6) 공공청사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162.1	1필지	1,162.1	획지분할 및 합병은 분양계획에 따름
H1	H1	1,162.1	화천리 2706-1	1,162.1	

7) 학교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3,499.8	1필지	13,499.8	획지분할 및 합병은 분양계획에 따름
II	II	13,499.8	화천리 2702	13,499.8	

8)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0,744.5	5필지	10,744.5	획지분할 및 합병은 분양계획에 따름
J1	J1	1,742.5	화천리 2706-3	1,742.5	
J2	J2	1,242.0	화천리 2714-5	1,242.0	
J3	J3	1,622.5	화천리 2722-1	1,622.5	
J4	J4	2,080.0	화천리 2726-4	2,080.0	
J5	J5	4,057.5	화천리 2699-4	4,057.5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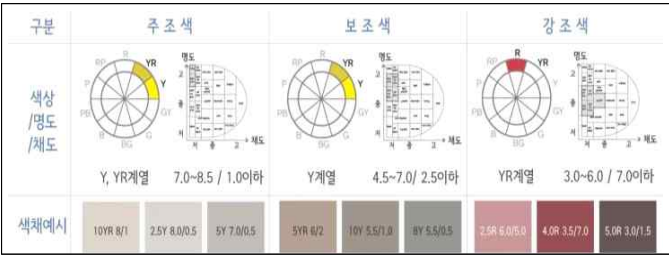
1)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8	A1-8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외 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단독주택 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 용도 - 단독주택 외 용도의 시설 설치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40%(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연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하며, 지하층은 주거·교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종교시설 중 봉안당,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예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으로 하며, 획지에 따라 남서 또는 남동향을 채택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부지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지조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배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마감높이와 20cm 이내로 조성하도록 권장 건축물 외벽은 건축물 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되, 주변 건축물과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권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1.5m 이하의 투사형 혹은 식생담장을 설치를 권장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화하고 차분한 이미지 연출을 주목적으로 하며, 강조색은 YR 계열 적용을 권장 <div style="text-align: center;">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조색</th> <th>보조색</th> <th>강조색</th> </tr> </thead> <tbody> <tr> <td>색상/명도/채도</td> <td></td> <td></td> <td></td> </tr> <tr> <td>색채예시</td> <td>10YR 8/1, 2.5Y 8.0/0.5, 5Y 7.0/0.5</td> <td>5YR 6/2, 10Y 5.5/1.0, 8Y 5.5/0.5</td> <td>4.5YR 6.5/4.0, 7YR 4.5/1.0, 6YR 3.5/1.5</td> </tr> </tbody> </table> </div>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명도/채도				색채예시	10YR 8/1, 2.5Y 8.0/0.5, 5Y 7.0/0.5	5YR 6/2, 10Y 5.5/1.0, 8Y 5.5/0.5	4.5YR 6.5/4.0, 7YR 4.5/1.0, 6YR 3.5/1.5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명도/채도													
색채예시	10YR 8/1, 2.5Y 8.0/0.5, 5Y 7.0/0.5	5YR 6/2, 10Y 5.5/1.0, 8Y 5.5/0.5	4.5YR 6.5/4.0, 7YR 4.5/1.0, 6YR 3.5/1.5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부착형 가로형 간판의 경우 바탕색의 과도한 색채사용을 피하고 단색 혹은 2색 이내의 사용을 권장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 1-역3호선변 : 1m 주차장 역2번 인접 필지 : 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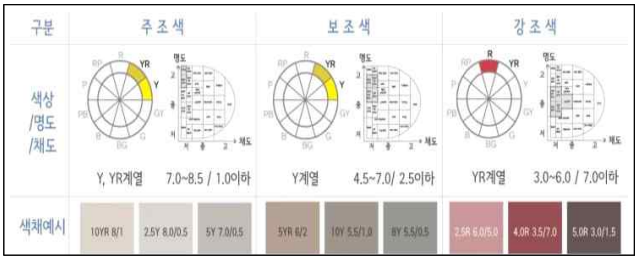
2)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B1-6	B1-6	용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예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층수제한 없음	
		배치	· 일조권을 감안하여 남향배치를 권장 ·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및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 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 주변 산림경관 및 수경축(고천)에 대한 건축물의 수직 배치 또는 탐상형 건축물 배치를 권장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를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권장 · 공동주택용지의 경계부 도로에 접한 담장의 높이는 1.5m이하로 투시형 혹은 식생담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부대복리시설은 담장설치를 제한	
		색채	· 온화하고 차분한 이미지 연출을 주목적으로하며, 강조색은 YR 계열 적용을 권장 	
		육외광고물	· 부대복리시설 건물 부착형 가로형 간판의 경우 바탕색의 과도한 색채사용을 피하고 단색 혹은 2색 이내의 사용을 권장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용지와 접한 모든 도로변 : 4m	


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C1-2	C1-2	용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종교시설 중 봉안당,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LPG충전소 제외)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예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층수제한 없음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방향과 평행하도록 배치	
		형태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서티는 투시형 서티를 설치 · 조립식 건물 및 샌드위치 판넬 외장은 지양을 권장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구조물(난방, 냉방설비 및 환기구 등)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권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부득이하게 설치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설치 가능(부득이 설치시 담장의 높이는 1.5m이하의 투시형 또는 식생담장 설치)	
		색채	·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 연출을 주목적으로 하며, 강조색은 YR, R 계열 적용을 권장 	
		옥외광고물	· 건물 부착형 가로형 간판의 경우 바탕색의 과도한 색채사용을 피하고 단색 혹은 2색 이내의 사용을 권장	
건축(한계)선	· 중로 1-역3호선변, 중로 1-21선변 : 2m · 주차장 역3 인근필지 : 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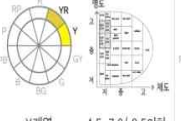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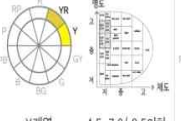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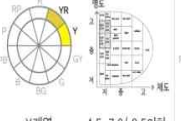
4) 상업·업무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D1-3	D1-3	용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운수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LPG충전소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예외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높이	층수제한 없음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방향과 평행하도록 배치 · 건축물의 주전면은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형태	·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권장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구조물(난방, 냉방설비 및 환기구 등)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권장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고, 실외기로 인한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부득이하게 설치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설치 가능(부득이 설치시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식생담장 설치)	
		색채	·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 연출을 주목적으로 하며, 강조색은 YR, R 계열 적용을 권장 	
		옥외광고물	· 건물 부착형 가로형 간판의 경우 바탕색의 과도한 색채사용을 피하고 단색 혹은 2색 이내의 사용을 권장	
		건축(한계)선	· 중로 1-역4호선변 : 4m · 주차장 역1, 역4 인근 필지 : 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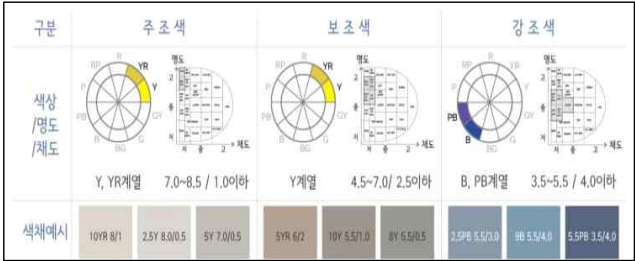
5) 준주거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G1	G1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상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LPG충전소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용도 기타	· 주거와 주거 외 시설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대 9:1로 설정 · 주거 외 시설 중 판매기능 시설은 지상 3층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 2층까지 권장 ·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 등의 출입구·계단 등을 주거 외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설치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층수제한 없음
		배치	· 일조권을 감안하여 남향 배치를 권장 ·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및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 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형태	· 주거동의 입면은 공동주택용지의 기준에 따른다. · 주상복합용도의 건물 설치 시 1층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부득이하게 설치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설치 가능(부득이 설치 시 담장의 높이는 1.5m이하의 투시형 또는 식생담장 설치)
		색채	·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 연출을 주목적으로 하며, 강조색은 YR, R 계열 적용을 권장 
		옥외광고물	· 건물 부착형 가로형 간판의 경우 바탕색의 과도한 색채사용을 피하고 단색 혹은 2색 이내의 사용을 권장
건축(한계)선	· 중로 1-역4호선변 : 4m		

6) 공공청사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H1	H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무 또는 이와 복합된 건축물 - 단, 공공용도 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LPG충전소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높이	층수제한 없음												
		배치	· 건축선을 후퇴하여 가로변 전면용지 최대한 확보												
		형태	· 공공건축물은 ‘한국적 전통 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 외관 조성을 권장 · 야간활동 지원 및 주요공간 장소성 강화를 위해 밝은 조명 등 설치를 권장												
		색채	· 정체성 및 장소성을 부각할 수 있는 이미지 연출을 주목적으로 하며, 강조색은 N계열 적용을 권장 <table border="1" data-bbox="588 1225 1210 1481"> <thead> <tr> <th>구분</th> <th>주조색</th> <th>보조색</th> <th>강조색</th> </tr> </thead> <tbody> <tr> <td>색상 / 명도 / 채도</td> <td> Y, YR계열 7.0~8.5 / 1.0이하</td> <td> Y계열 4.5~7.0 / 2.5이하</td> <td> N7.5~N2.0</td> </tr> <tr> <td>색채예시</td> <td>10YR 8/1, 2.5Y 8.0/0.5, 5Y 7.0/0.5</td> <td>5YR 8/2, 10Y 5.5/1.0, 8Y 5.5/0.5</td> <td>N6.0, N4.0, N2.0</td> </tr> </tbody> </table>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 명도 / 채도	 Y, YR계열 7.0~8.5 / 1.0이하	 Y계열 4.5~7.0 / 2.5이하	 N7.5~N2.0	색채예시	10YR 8/1, 2.5Y 8.0/0.5, 5Y 7.0/0.5	5YR 8/2, 10Y 5.5/1.0, 8Y 5.5/0.5	N6.0, N4.0, N2.0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 명도 / 채도	 Y, YR계열 7.0~8.5 / 1.0이하	 Y계열 4.5~7.0 / 2.5이하	 N7.5~N2.0										
색채예시	10YR 8/1, 2.5Y 8.0/0.5, 5Y 7.0/0.5	5YR 8/2, 10Y 5.5/1.0, 8Y 5.5/0.5	N6.0, N4.0, N2.0												
옥외광고물	-														
건축(한계)선	· 도로변 : 2m														

7) 학교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II	II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층수제한 없음
		배치	· 교사는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
		형태	· 공원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
		색채	· 모던하고 미래첨단의 이미지 연출을 주목적으로 하며, 강조색은 B, PB 계열을 적용 
		옥외광고물	-
		건축(한계)선	-

8) 주차장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J1-5	J1-5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30%이하로 설치 가능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칠담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해당블록	J1, J3, J5	J2,	J4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200%이하	1,000% 이하	
		높이	층수제한 없음			
		배치	· 인접한 주거용지의 일조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배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변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 포함)해서는 안 됨(단,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제외)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권장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등을 두어 담장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 설치 시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식생담장 설치 			
		색채	-			
		옥외광고물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2m, 4m)					

마.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

- 교통처리계획은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른다.
-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 D1(D1-1~D1-5), D2(D2-1~D2-6)

II.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없음

가.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신경주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민간부문에 적용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 ①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비롯한 제반 관련법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른다.
- ②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하는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것으로서 계획 및 조성에 참고하여야 한다.
- ③ 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규 내지 조례와 상이한 경우에는 현행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시행지침의 규제내용을 따른다.

④ 향후 관련법령, 조례 및 지침 등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가장 최근에 변경된 법령, 조례 및 지침 등을 적용한다.

⑤ 본 시행지침 중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민간부문사업 시행중 공공부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다음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해당 법규에서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되어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도면표시 :



2. “대지”라 함은 건축법상 대지를 말한다.

3.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4. “가구(블럭)”라 함은 도로에 의해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5. “허용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도 본 지구단위계획상에 별도로 명시하여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한다.

6.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본 지침에 의거 그 필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용도를 말한다.
7. “점포주택”라 함은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8. “부대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9. “건폐율”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의 최대한도를 말한다.
10.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의 최대한도를 말한다.
11. “최고층수”라 함은 당해 가구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시, 허용되는 층수로 지정된 층수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2.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지상부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게 한 선을 말한다.
13. “건축물의 전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보행주출입구)가 설치되는 면을 말한다.
14. “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15.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7/10 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6.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10 이상 3/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7.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8.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19. “옥상녹화”는 옥상부 조경으로서 각종 구조물들로 인한 경관악화를 완화하고,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반 상부에 녹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21.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22.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3.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4.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5. “내력벽”이란 건축물에서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어 내기 위하여 만든 벽을 말한다.
26.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4조 (단위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할 경우 최소 개발규모 이상의 획지 단위로 건축하여야 한다.

제5조 (최소 개발규모)

소규모 획지의 개발억제 및 구역 내 적정규모의 대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소개발규모는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에 의거 60㎡이상이므로 한다.

제6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획지 분할 및 합병은 『경주시 건축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한 최소규모를 준수하고, 향후 시설물 입지규모를 고려하여 분양계획에 따른다.

제3장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제7조 (허용용도/불허용도)

- ①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일지라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건축할 수 없다.

②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각각의 용도지역 내 건축 가능한 용도에도 불구하고 결정도에 불허용도가 표시된 대지에서는 그 구분에 따라 다음 용도제한 분류표에 제시된 용도는 건축할 수 없다.

③ 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 용도에 대하여는 그 용도를 인정하고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침상의 용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는 다음과 같다.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단독주택용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외 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단독주택 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용도 - 단독주택 외 용도의 시설 설치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40%(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하며, 지하층은 주거·교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종교시설 중 봉안당,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공동주택용지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근린생활시설용지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종교시설 중 봉안당,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LPG충전소 제외)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상업업무시설용지	D1 - 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운수시설, 위탁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LPG충전소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준주거 용지	G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도시 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LPG충전소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공공 청사	H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무 또는 이와 복합된 건축물 - 단, 공공용도 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LPG충전소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초등 학교	I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시설	· 허용용도 이외 시설
주차장	J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30%이하로 설치 가능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원, 장의사, 안마시설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제4장 건축물 밀도에 관한 사항

제8조 (건폐율)

- ①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8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조항을 준용하여 다음에 제시된 건폐율 제한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 ② 본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건폐율 제한	비고
단독주택 용지	A	60% 이하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적용 -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용지	B	60% 이하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 시설용지	C	60% 이하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업업무 시설용지	D	80% 이하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적용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용지	G	70% 이하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적용 - 준주거지역
공공청사용 지	H	80% 이하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적용 - 일반상업지역
학교시설 용지	I	50% 이하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	J1, J2, J3, J5	60% 이하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적용 -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
	J4	80% 이하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적용 - 일반상업지역

③ 도면표시 :

건폐율	

제9조 (용적률)

①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8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조항을 준용하여 다음에 제시된 용적률 제한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② 본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적용하는 용적률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용적률 제한	비고
단독주택 용지	A	200% 이하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적용 -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용지	B	240% 이하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 시설용지	C	250% 이하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업업무 시설용지	D	1,000% 이하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적용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 용지	G	400% 이하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적용 - 준주거지역
공공청사 용지	H	1,000% 이하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적용 - 일반상업지역
학교시설 용지	I	250% 이하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	J1, J3, J5	250% 이하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의거 용적률 적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J2	200% 이하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적용 - 제1종일반주거지역
	J4	1,000% 이하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적용 - 일반상업지역

③ 도면표시 :

	용적률

제5장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

제10조 (건축물의 높이)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에 제시된 높이제한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② 각 필지별 건축물은 지정된 최고높이를 넘어 건축할 수 없으며,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은 이 최고높이와 중복되어 적용된다.

구분		층수 제한	구분		층수 제한
단독주택용지	A	4층 이하	준주거용지	G	층수제한 없음
공동주택용지	B	층수제한 없음	공공청사용지	H	층수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용지	C	층수제한 없음	학교시설용지	I	층수제한 없음
상업업무시설용지	D	층수제한 없음	주차장	J	층수제한 없음

	최고높이
③ 도면표시 :	

제6장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제11조 (건축한계선)


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②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 중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는 담장, 화단, 주차장 등 보행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건축한계선 이격공간은 가급적 공개공지, 공공조경, 전면공지 등의 조성을 권장한다.

④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적용하는 건축한계선은 다음의 표와 같다.

⑤ 도면표시 : 건축한계선 

제7장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제12조 (외벽의 재료 및 형태)

① 건축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되, 주변 건축물과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② 가로변 저층부의 외벽면은 개방감 확보를 위해 투시율이 높은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제13조 (외벽의 재료 및 형태)

1층에 여러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센치미터 이내로

한다.

제14조 (지붕)

①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권장하나, 건축물의 용도 및 개인 건축의도를 존중하여 다양한 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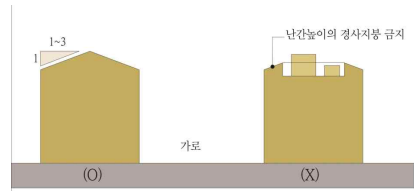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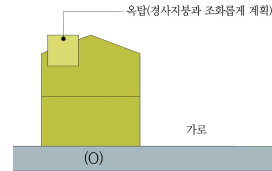
1. 지붕형태는 경관에 어울리도록 사용을 권장한다.

2. 경사지붕 설치 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 전기·전화·통신 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 보이지 않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4.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1:1 ~ 1:3 이 되도록 한다.

〈지붕설치 예시〉



제15조 (옥외광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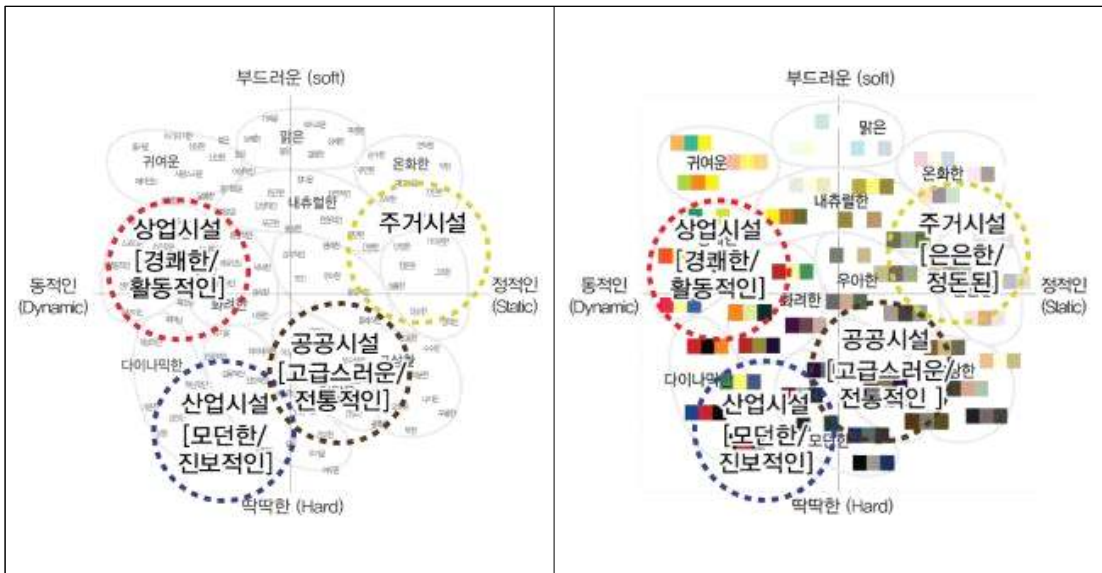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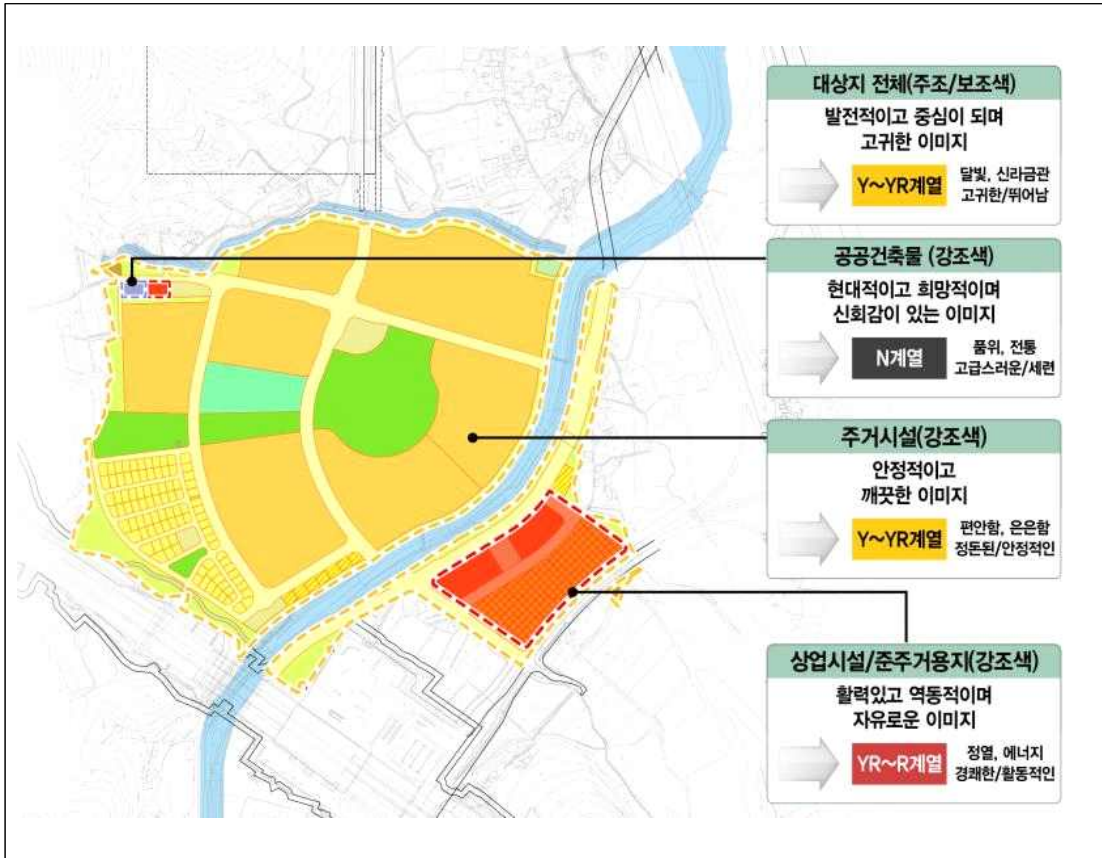
규격외의 광고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16조 (담장, 대문 및 셔터 등)

- ① 단독주택용지의 담장 및 대문 설치 시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권장하며,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로 권장 한다.
- ② 공동주택용지의 경계부 도로에 접한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투시형 또는 식생담장을 설치하도록 하며 부대복리시설은 담장설치를 제한한다.
-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업무시설용지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용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부득이하게 설치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 ④ 재료,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어야 한다.

제17조 (건축물의 색채)

- ① 각 권역별 색채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②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색상·명도·채도를 규정하여 지구의 전체적인 통일감, 연속감 부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③ 도료에 의한 색채계획보다 다양한 재료의 사용으로 재료 본연의 색채가 부각되도록 한다.



④ 유형별 색채연출을 위한 색채가이드라인은 아래의 각호와 같이 권장한다.

1. 주거시설은 온화하고 차분한 이미지 연출을 주목적으로 하며, 강조색은 YR 계열을 적용한다.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명도 /채도	 Y, YR계열 7.0~8.5 / 1.0이하	 Y계열 4.5~7.0/ 2.5이하	 YR계열 3.5~5.5 / 4.0이하
색채예시	10YR 8/1 2.5Y 8.0/0.5 5Y 7.0/0.5	5YR 6/2 10Y 5.5/1.0 8Y 5.5/0.5	4.5YR 5.5/4.0 7YR 4.5/1.0 6YR 3.5/1.5

2. 상업시설은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 연출을 주목적으로 하며, 강조색은 YR, R 계열을 적용한다.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명도 /채도	 Y, YR계열 7.0~8.5 / 1.0이하	 Y계열 4.5~7.0/ 2.5이하	 YR계열 3.0~6.0 / 7.0이하
색채예시	10YR 8/1 2.5Y 8.0/0.5 5Y 7.0/0.5	5YR 6/2 10Y 5.5/1.0 8Y 5.5/0.5	2.5R 6.0/5.0 4.0R 3.5/7.0 5.0R 3.0/1.5

3. 공공시설(공공청사)은 정체성 및 장소성을 부각할 수 있는 이미지 연출을 주목적으로 하며, 강조색은 N 계열을 적용한다.

구분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색상 /명도 /채도	 <p>Y, YR계열 7.0~8.5 / 1.0이하</p>	 <p>Y계열 4.5~7.0/ 2.5이하</p>	 <p>N7.5~N2.0</p>
색채예시			

4. 공공시설(교육)은 모던하고 미래첨단의 이미지 연출을 주목적으로 하며, 강조색은 B, PB 계열을 적용한다.

구분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색상 /명도 /채도	 <p>Y, YR계열 7.0~8.5 / 1.0이하</p>	 <p>Y계열 4.5~7.0/ 2.5이하</p>	 <p>B, PB계열 3.5~5.5 / 4.0이하</p>
색채예시			

제8장 건축물 특화디자인에 관한 사항

제18조 (특화디자인 구역 선정 및 기본방향)

- ① 대상지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하천 주변으로 입지하는 공동주택 및 상업업무시설을 특화 디자인 구역으로 선정한다.
- ② 내부의 고분군과 연결한 공공건축물을 특화디자인 구역으로 선정한다.
- ③ 배치, 재질, 입면 패턴 등의 요소에 제한적으로 전통문화 특성 적용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공공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역사지구 및 문화재를 존중한 디자인을 적용 • 수평적인 랜드마크를 형성하며, 전통 마을 구성원리를 적용 배치 권장
수변 연접부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주거건축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살리도록 권장 • 신경주 역사의 처마지붕과 어울리는 경사형 지붕 도입 권장 • 전통적이며, 경주 대표색을 사용하여 역사도시 특성을 확보 • 주변 하천을 향한 통경축 확보 권장 • 주변 상업업무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권장
수변 연접부 상업업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가치를 살리고, 품격 향상을 위한 형태적 디자인 발굴 • 전통 한옥에서 적용하는 토 담장, 자연석 담장 등을 모티브로 한 패턴 권장

제9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19조 (전면공지)

- ① 이면도로 획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건축 허가 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
- ②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대지 내 공지는 접한 도로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 ③ 전면공지 내에는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통행방해물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조성방식예시
 1. 단처리 : 건축선 후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획지 내 공지는 접한 보도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통행자의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2. 포장 : 포장패턴 조성 시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는 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 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고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통행방해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10장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 (대지내 차량 출입 및 차량출입불허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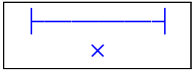
- ①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 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5m를 초과할 수 없다.

③ ②에서 제시한 용지 외의 경우 차량의 출입구 폭원을 최소 6.5m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차량출입불허구간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사항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용지 제외)

- 1. 하천, 공공보행통로,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연결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2.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10m 이내의 구간

⑤ 도면표시 : 차량출입불허구간 

제21조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①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 당 2대 이상'과 '경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경주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경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

한다.

제22조 (주차장 용지내 건축물의 설치)

- ① 주차장 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장~제5장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 ② 주차전용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비율(용적률)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2.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2곳 이상(출구와 입구가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 한곳 이상)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제11장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사항

제23조 (옥상녹화)

- ①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에 적합하게 옥상조경을 하도록 권장한다.
- ② 옥상녹화 조성예시

기존 건축물의 경우	신축 건축물의 경우

자료 : 건축물 옥상녹화 시스템 유형결정과 관리 매뉴얼(서울시, 2007)

제24조 (녹색주차장)

-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장 설치 시 녹색(잔디, 투수성 포장)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② 녹색주차장 조성예시

스페이스페이빙(Space Paving)	중공형 블록(Hopsack Paving)

제1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25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관련법규, 조례 및 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및 지침 등에 따른다.

②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및 시행지침에 제시된 예시 및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설계목표나 방향 등을 가시화 한 것으로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 조성방식은 허가권자와 협의·조정을 통해 설치하도록 한다.

③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는 내용들 중 논란의 소지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해석하는 지침에 따른다.

1. 제4장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중 건축물 밀도를 제한하는 건폐율·용적률·층수에 대한 밀도 규정은 해당 획지의 제시된 밀도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입지 가능한 최대 규모를 명시한 사항임. 따라서 제시된 밀도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계획은 입지 가능한 것으로 본다.

2. 제6장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중 건축한계선이 지정되는 획지에 대해서는 경주시 건축조례 별표4에 해당하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중복적용 하지 않는다. 당해 지침과 건축조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시행지침의 규제내용을 적용한다.

나.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본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신경주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공공부문에 적용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공부문”이라 함은 도로시설물, 옥외 가로시설물, 포장, 주차장 등 공공에 의해 조성되는 공간이나 시설로서 공중의 일반적 이용에 개발되는 부문을 말한다.

제2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 조례, 지침 등에 따른다.

② 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시행지침의 내용을 따르도록 한다.

③ 향후 관련법규의 개정에 의거하여 보다 개선된 공공부문계획, 설계내용이 수립되어 본 지침을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 본 지침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조의 정의를 따른다.
- ② 본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해당 법규에서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시설별 시행지침

제1절 도로시설

제4조 (적용범위)

대상지내 시설 중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을 따르며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정 해설 및 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5조 (도로의 설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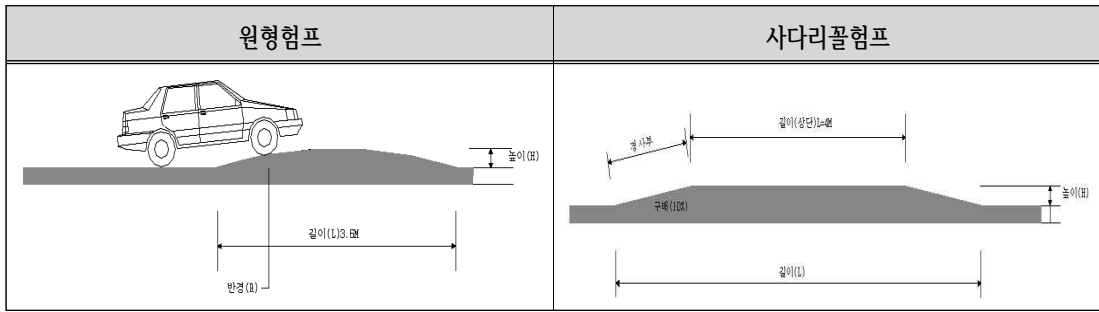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작물, 담장, 계단, 조경, 화단, 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없으나 주차차량의 보도진입을 막기 위한 차폐관련 시설 및 보행인의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보행자전용도로)

- ① 보행자전용도로의 출입부에는 차량통행의 금지를 위한 차량제어용 블라드를 설치하되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해 설치 및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 ② 연접 건축물의 전면공간은 보행통행에 방해를 주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포장재료와 패턴은 다양한 질감 및 색감 등을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일반도로와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도로 기능성, 인식성 제고, 식별성을 높이는 포장 및 패턴을 사용한다.

제7조 (과속방지 시설)

- ① 설치간격은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90m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 ② 교차로부근, 특정 건축물의 차량출입구, 급경사 구간의 정상부분 등 차량의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한다.
- ③ 설치위치는 차량 통행보다 보행 교통이 우선시되는 지역으로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생활의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한다.
- ④ 과속방지사설의 설치 시 차량 진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D=20m내외) 내에는 진출입 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설치를 배제한다.
- ⑤ 과속방지턱 예시도



제8조 (횡단보도)

- 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교차지점에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한다.
- ② 설치위치 및 폭원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교통처리개선계획을 참조한다.
- ③ 장애인을 위해 경계석 턱을 낮추고 벨 신호기나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 보도블럭을 설치한다.
- ④ 차도와 횡단보도 경계부분에 불법 차량진입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블라드 겸 야간반사 인식물 등을 설치한다.

제9조 (보도)

- ① 보행자가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하기 위한 충분한 폭을 확보한다.
- ② 교통시설물의 폭 및 지하매설물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을 확보한다.
- ③ 보도 포장재의 형태 및 규격은 가로 전체의 통일성과 주변시설들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통일감 있게 조성한다.
- ④ 공공부문의 보도 포장원칙은 통일성과 조화의 유도와 민간부문의 포장을 선도하

기 위하여 제시하며 민간부문의 개별포장 기준보다 우선순위를 둔다.

제10조 (자전거도로의 적용범위)

① 일반도로 중 자전거 이용도로 및 이에 부수되는 자전거 주차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계획에 따른다.

제2절 가로시설물

제11조 (기본원칙)

① 시설물 배치를 통합하여 원활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1. 시설물 배치시 유사한 기능은 통합설치, 시설물 차폐감은 최소화하도록 한다.

② 안전한 보행을 보도의 최우선 과제로서 고려한다.

1. 보도의 턱과 돌출물을 제한하여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한다.

③ 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한 공공시설물 배치를 지향한다.

1. 단순한 기능위주의 설치가 아닌 설치 후 사용과 관리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공간을 지향한다.

④ 도시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방되고 쾌적한 공간을 지향한다.

1. 사각지대 또는 야간시 안전이 우려되는 구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설계한다.

⑤ 경주시의 상징로고, 과장된 패턴 사용을 지양한다.

⑥ 문화재 주변의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12조 (벤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좌석의 높이와 폭, 깊이 선정 시 인체공학적 치수를 적용한다.

1. 크기 및 구조 결정시(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참조하도록 한다.

② 안전을 위해 신체와 접촉하는 부분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한다.

1. 신체와 직접 닿는 부위는 목재 등의 가급적 부드러운 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③ 미관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 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1. 철, 스틸,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금속은 자유로운 조형이 필요한 경우나 내구성이 중요시 되는 부분에 적용한다.

④ 목재 사용 시 유색 페인트 도장을 지양하고 인체에 무해한 방부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 좌판은 사용 쾌적성을 고려하여 목재의 사용을 권장하고 페인트 사용을 지양한다.

⑤ 스틸 사용 시 페인트 도장은 지양하고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권장한다.

1. 스틸은 내구성이 있는 무광도료로 표면을 처리한다.

2.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원색 도는 고채도의 색채 사용을 지양한다.

- ⑥ 이용자의 접촉이 많은 표면은 오염에 강하고 청소가 용이하도록 마감한다.
- ⑦ 배치장소와 활용도에 따라 등받이의 유무를 구분하여 설치한다.
 - 1. 등벤치는 비교적 장시간 휴게가 가능한 곳에 배치한다.
- ⑧ 설치장소가 경사면이라도 좌대 또는 지붕이 수평을 이루도록 한다.
- ⑨ 주변 조건에 의해 그늘이 형성되는 장소에 설치하며 가로등이나 보안등과 같은 조명시설에 인접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한다.
- ⑩ 보행자의 동선에 방해되는 장소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 ⑪ 다른 시설물과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시설물간 연계할 것을 권장한다.
- ⑫ 지지대와 앵커볼트는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고 조립부의 볼트 또한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⑬ 우천 시 배수와 건조가 용이하게 디자인 한다.
- ⑭ 벤치 설치 적용 예시



제13조 (파고라 설치에 관한 사항)

- ① 공원, 가로, 산책로, 포켓공원 등 설치장소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1. 보행자의 동선에 방해되는 장소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 ② 간결한 구조로 개방성을 향상하고, 설치 장소에 따라 확장 및 다양한 조합이 가

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③ 내부에 휠체어 진입이 가능하고 휴식 공간 내부에서 휠체어 회전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한다.

④ 유지보수에 유리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1. 우천 시 배수와 건조가 용이하게 디자인 한다.

⑤ 기능이 유사한 시설물 간에 적극적인 통합화를 지향하고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1.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차폐성을 최대한 배재하여 디자인 한다.

⑥ 지붕 차폐 시 자외선 및 열에 의한 변색이나 형태변화가 크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다.

⑦ 이용자의 접촉이 많은 표면은 오염에 강하고 청소가 용이하도록 마감한다.

⑧ 주변 환경 및 조경요소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소재 및 색상을 선택하도록 한다.

1. 시설물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소재를 적용하도록 한다.

2. 조화성을 이루며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채 적용을 지양하도록 한다.

⑨ 조명을 내장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⑩ 조명을 별도로 내장하지 않은 경우 가로등, 보행등 등의 조망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⑪ 태양광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최적의 그늘을 형성하도록 설치 위치 선정시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⑫ 기초시공 시 지지대, 앵커볼트는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한다.

- ⑬ 조립부의 볼트도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⑭ 구조물의 식생녹화를 권장한다.
- ⑮ 설치장소가 경사면이라도 좌대 또는 지붕이 수평을 이루도록 한다.
- ⑯ 안전을 위해 신체와 접촉하는 부분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 ⑰ 파고라 설치 적용 예시



제14조 (블라드 설치에 관한 사항)

- ① 파손이나 훼손 시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한 구조를 가지도록 한다.
- ②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보도와 시각적 연속성을 이루도록 한다.
- ③ 자동차의 보도침입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구성 있는 형태와 재질로 설계한다.
- ④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모든 모서리는 둥글게 곡면 처리한다.
- ⑤ 블라드의 적정규격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높이 : 800~1,000 mm, 직경 : 100~200mm 으로 한다.
- ⑥ 야간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부분적으로 기능적인 재질(ex: 반사지) 및 색채를 적용하거나 조명을 매입하여 설치한다.
- ⑦ 운전자의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강한 유광택 재

질은 넓은 면적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며 사용할 경우 광택을 줄이도록 표면을 처리한다.

⑧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질을 사용한다.

⑨ 주변경관 및 시설물 설치구간 내 타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가급적 명도와 채도를 낮춘다.

⑩ 기초공사 시 지지대와 앵커볼트는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한다.

⑪ 보행자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가급적 시설물 설치 구역 내에 배치하며 기능이 유사한 시설물 간의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⑫ 차량이 블라드에 부딪혔을 경우 차량의 손상을 막기 위한 완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⑬ 블라드 설치 적용 예시



제15조 (가로등 설치에 관한 사항)

① 가로등은 같은 선상에 배치되는 시설물들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불필요한 장식요소를 제거하여 간결한 형태로 연출한다.

② 경주시의 로고, 장식이나 상징물의 남용은 지양하고 단순한 형태를 지향한다.

③ 인접하여 설치되는 시설물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하는 것

을 권장한다.

④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며 사용 시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 권장한다.

⑤ 부득이하게 경주시 심볼마크 및 로고 등 로고 부착 시 가급적 무채색, 단색으로 음각처리 하고 고채도 사용을 제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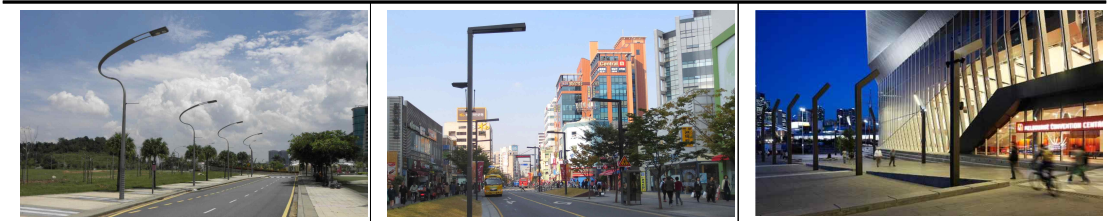
⑥ 통합지주의 색채는 전체를 통일하도록 권장한다.

⑦ 시설물과 접하는 바닥 포장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한다.

⑧ 조명의 눈부심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어하여 설치한다.

⑨ 주변 보행로, 산책로 등과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⑩ 가로등 설치 적용 예시



제16조 (보행등 설치에 관한 사항)

① 경주시의 로고, 장식이나 상징물의 남용은 지양하고 단순한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하게 경주시 심볼마크 및 로고 등 로고 부착 시 가급적 무채색, 단색으로 음각처리 하고 고채도 사용을 제한한다.

③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권장한다.

- ④ 블라드 등과 같은 시설물과 통합하거나 벽면에 매입하여 공간 활용을 높일 것을 권장한다.
- ⑤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조명보다 간접조명을 권장한다.
- ⑥ 보도의 점유면적을 최소화하여 보행자의 통행과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⑦ 광공해 방지를 위해 cut-off 방식의 조명을 사용한다.
- ⑧ 연속적으로 배치되는 특성상 과도한 장식위주의 형태는 지양한다.
- ⑨ 간결하고 미려한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한다.
- ⑩ 보행등 설치 적용 예시



제17조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관한 사항)

- ① 우천 시에도 자전거 보관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되 과도한 부피감과 장식적인 요소는 배제한다.
- ②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한 소재를 사용한다.
- ③ 설치되는 장소의 공간요소들과 조화되는 형태를 적용하여 가로환경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④ 원색이나 고채도, 고명도의 색채 사용을 지양한다.

- ⑤ 경주시의 로고, 장식이나 상징물의 남용은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한다.
- ⑥ 구조 자체의 조형성을 살리고 불필요한 장식적 형태는 지양한다.
- ⑦ 보도 상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벽면은 시각적 개방감을 갖도록 투명재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⑧ 보도 폭에 따라 시설물의 크기가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한다.
- ⑨ 자전거보관대 설치 적용 예시



제18조 (통합지주의 설치 및 가로시설물의 통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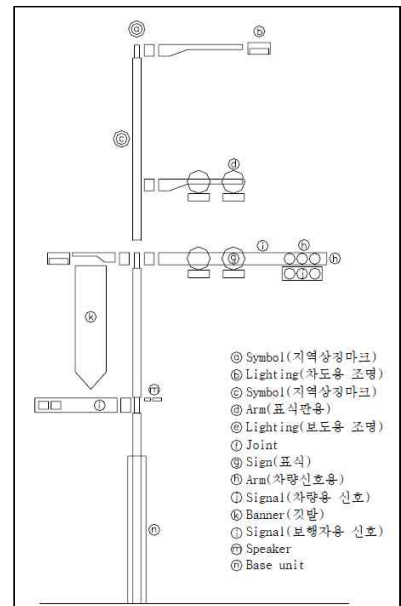
<통합지주 설치 예시도>

① 통합지주 설치

1. 신호등, 가로등, 안내표지판 등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 설치함으로써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② 가로시설물의 통합화

1. 안내시설, 조명시설, 파고라, 벤치 등 휴식시설, 우체통, 전화박스 등 편의시설의 집단배치를 유도한다.



2.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겸용할 수 있는 시설은 통합하여 시설수의 최소화를 유도한다.

(예 : 조명등 겸 벤치, 수목보호대와 벤치, 플랜터와 조명시설 등)

3. 통합화된 시설들은 동질성 있는 디자인 계획으로 시설별 일체성 있는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

제3절 야간조명

제19조 (도로 및 가로의 조명설치 기본방향)

- ① 설계 시 노면의 균제도 확보에 유의하도록 한다.
- ② 등기구의 형태는 무채색 계열의 단순한 형태를 원칙으로 하며 과도한 장식적 요소의 적용을 지양한다.
- ③ 눈부심 방지를 위한 글레어 컨트롤(Glare Control)을 적용하도록 한다.
- ④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차로, 횡단보도 및 도로구조가 변하는 구간에는 광원의 색온도를 주변과 차별화하고 조도를 강화하여 자동차 운전자의 인지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권장한다.

제20조 (가로등 설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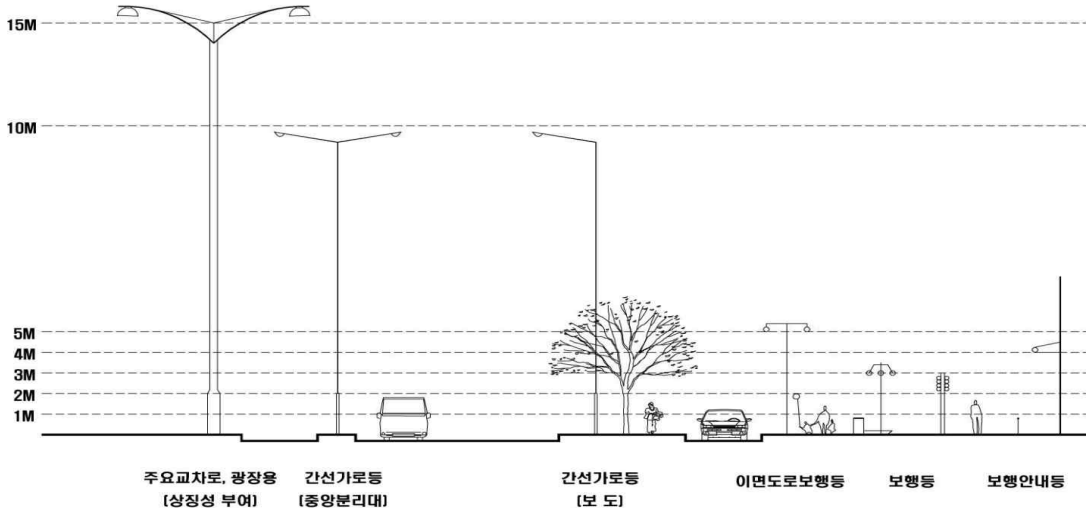
- ①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KSA 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 ②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한다.
- ③ 가로변 일반구간은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구조가 변화하는 곳,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지점에는 주간과 거의 같은 수준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④ 보도의 보행자용 가로등은 상호 교호형식으로 배치하고 조명이 발산하는 색감은 가로 특성에 맞게 유도·조정한다.
- ⑤ 도로변의 가로등주는 테이블폴이나 주철폴을 사용하고 중심지역, 공원 보행자공간에는 주철폴을 사용한다.
- ⑥ 가로등주의 디자인은 무채색 계열의 간결하고 단순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 노선별로 가로시설이 통합된 디자인을 도입하여 전체적인 통일성이 유지되고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배치한다.

(조명기준의 차별화 방안)

구분	주간선도로	집·분산도로
조도	30lx 이상	20lx 이상
높이	10~20m	5~10m
간격	30~40m	40~50m
등종	높은 조도의 등(예 : 고압 나트륨 등)	자연색조의 등(예 : 메탈 등)
배치 방식	마주보기식	어긋나기식

〈조명시설의 설치 예시〉



〈오픈스페이스 야간조명 권장 예시〉



제4절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제21조 (기본원칙)

- ① 지역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인공적 구조물보다는 공원 및 녹지 등의 자연적인 공간을 대중에 제공하여, 도시경관의 균형을 맞추는 공지의 개념으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한다.
- ② 하천, 역사문화자원 등 기존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지 전체를 연결하는 오픈스페이스로 계획한다.

- ③ 과도한 디자인과 색채, 상징표현을 지양하여 정돈되고 조화로우며 공간별 특성에 따른 테마부여 및 정체성이 있는 경관 연출한다.
- ④ 교통약자들의 이용에도 지장이 없도록 안전한 보행을 위해 장애 없는 보도 조성한다.
- ⑤ 녹지공간의 적극적 도입과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지속가능한 경관을 연출 한다.
- ⑥ 지속성과 건강성을 위해 오픈스페이스 내 녹지 및 투수면적 확보한다.
- ⑦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자연소재를 활용한다.
- ⑧ 대상지 고유의 자연·문화 경관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제22조 (공원)

- ① 공원은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다.
- ②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인근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하천 등의 녹화공간을 연계하여 상징성 있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 ③ 어린이공원은 지역주민의 친교·휴게·모임 등 커뮤니티 공간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제23조 (연결녹지)

연결녹지는 인접한 용지 간 완충기능 및 주민들의 산책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제24조 (완충녹지)

① 완충녹지는 간선도로변에 설치하여 환경저해요인을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1. 불량경관, 소음의 차폐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식재지반을 마운딩으로 조성한다.

2. 상록수 상층목이 수백을 이루어 사철 푸른 경관형성 및 차폐효과를 도모한다.

3. 내공해성 및 내염해성이 강한 수종 및 향토수종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제25조 (보행공간)

① 필요한 공간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을 배치하고 그 주변에 돌출 시설물 등 장애물 설치를 제한한다.

② 안내판 등의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식재와 지주안내판의 적정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③ 보도면의 색채는 가급적 저채도로 하고, 유사색상 및 유사명도 배색으로 3색 이상 배색을 지양한다.

- ④ 보도블럭은 동식물, 문자 등을 형상화한 사실적인 패턴적용을 지양하고 기하학적인 패턴 적용을 권장한다.
- ⑤ 보도블럭의 패턴 개발 시 일정구간을 유니트화 하여 설계하며 보도 폭에 따른 패턴 이미지의 변화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⑥ 통행 구역 내 고정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단,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제5절 포장

제26조 (재료 선정기준)

- ① 시공이 용이하고 견고한 재료
- ②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있으며, 자연배수와 세척 및 수선이 용이한 재료
- ③ 보행자 하중은 물론 중차량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재료
- ④ 질감이나 색채가 아름답고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외관이 변하지 않는 재료
- ⑤ 가로의 특수한 환경에 부합하는 향토적인 재료

제27조 (구역내 도로 포장기준)

-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되는 가로에 관련하여 포장재의 형태 및 규격은 가로 전체의 통일성과 주변 시설물들과의 조화를 유도한다.
- ② 공공부문의 포장원칙은 통일성과 조화의 유도와 민간부문의 포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제시하며 민간부문의 개별 포장기준 보다는 우선순위를 둔다.

제28조 (사후관리)

- ① 민간·공공 등 타부문의 공사 시행으로 인한 포장 훼손 시 공사 완료 후 당초 대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공사완료 후 공사시행자는 일체의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 시 첨부자료 : 공사시행 전/후 현황사진)

제3장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29조 (설계도서 작성)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공공부분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의 공공부문 지침 및 예시를 기초로 하여 부문별로 면밀한 여건 분석과 계획, 설계 등의 상세 도서를 작성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 (지침의 조정)

- ① 본 지침상의 예시된 사항이라도 향후 별도의 부문별 계획설계 등 상세한 설계가 추진되어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또는 조정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들 계획을 반영·조정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구역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나 교통관련사업,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세부조성계획 변경 포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Ⅲ. 관련도서 열람방법

-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나. 이해관계인은 아래 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경주시청 도시계획과 (☎ 054-779-6434)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 054-773-5633)

문경시 고시 제2024 - 119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1-비2호선 개설공사]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문경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1-비2호선 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변경)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2일

문 경 시 장

1. 사업의 개요

- 1) 사업의 종류 : (기정) 문경 하초 도시계획도로(소로1-하초1호선)개설공사
(변경) 문경 하초 도시계획도로(소로1-비2호선)개설공사
- 2)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일원
- 3) 사업의 규모

구분	규 모			연 장	토 지 내 역	비고
	사 업 명	위 치	명 칭			
기정	문경 하초 도시계획도로 (소로1-하초1호선)개설공사	문경읍 하초리	소로1- 하초1호선	230m	문경읍 하초리 산79 외 5필지	
변경	문경 하초 도시계획도로 (소로1-비2호선)개설공사	문경읍 하초리	소로1- 비2호선	230m	문경읍 하초리 243 외 9필지	

4) 사업의 목적 : 새재종합휴양단지(하초지구) 진출입로 개설

5)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

2. 사업시행자

1) 주 소 : 문경시 당교로 225

2) 성 명 : 문경시장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 지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명세	
합 계		기정	6필지		153,891	3,647						
		변경	10필지		86,520	3,995						
1	문경읍 하초리	변경	123-4	하천	2,191	80	문경시					금회 추가
2	문경읍 하초리	변경	123-10	하천	80	38	문경시					금회 추가
3	문경읍 하초리	기정	243	대지	2,251	1,149	문경시					
		변경	243	대지	2,251	1,451	문경시					

번호	토 지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명세	
4	문경읍 하초리	기정	250	대지	32,011	277	문경시					
		변경	250	대지	32,002	455	문경시					
5	문경읍 하초리	기정	396	하천	36,464	742	국 (기획재정부)					
		변경	396	하천	22,513	162	국 (기획재정부)					
6		변경	396-10	하천	1,344	580	국 (기획재정부)					토지 분할
7	문경읍 하초리	기정	401	구거	1,359	547	국 (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401	구거	1,359	1,081	국 (농림축산 식품부)					
8	문경읍 하초리	기정	산79	임야	55,140	649	주*** 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				
		변경	산79-1	임야	67	67	주*** 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				분할
9	문경읍 하초리	기정	산80	임야	26,666	283	주*** 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				
		변경	산80-4	임야	66	66	주*** 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				분할
10	문경읍 하초리	변경	산81-4	임야	15	15	문경시					금회 추가

5. 관계도서 및 도면은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054-550-616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면게재 생략)



시 군

공 고

영주시 공고 제2024 - 142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992번지 일원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반인에게 열람공고 하오니, 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24. 08. 12. ~ 09. 02. (토요일, 국·공휴일 제외 14일 이상)

2. 열람장소 : 영주시 공원관리과 공원관리팀

3.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나.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4. 의견서 제출장소 : 영주시 공원관리과 공원관리팀(☎ 054-639-6897)

5.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원명	위 치	내 용	비고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봉현면 오현리 992번지 일원	· 교양시설 건축바닥면적 - 111.28㎡ → 2,111.28, 증 2,000㎡ · 공원관리시설 건축물 용도 변경 - 관리사무소, 다용소시설 → 관리사무소	

6.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7.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나. 제 출 처 : 영주시 공원관리과[영주시 시청로1(휴천동 470번지) 영주시청]

다. 제출방법 : 서면 제출(서식 열람장소 비치)

8.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청 공원관리과 공원관리팀(☎

054-639-6897)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부.

2. 의견서 1부. 끝.

2024. 8. 12.

영 주 시 장

【붙임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공원조성계획(총괄)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변경	1	풍기인삼 문화 팝업공원	문화공원	봉현면 오현리 992번지 일원	23,966.6	-	23,966.6	2020.12.03. (경고제418호)	

나. 시설결정 총괄표

구 분		면 적 (㎡)			건축 바닥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구성비(%)	기 정	변 경	
총 계		23,966.6	23,966.6	100.0	403.14	2,403.14	
시 설 종 류	소 계	23,535	23,535	98.2	403.14	2,403.14	
	도 로 및 광	4,889	4,889	20.4			
	조 경 시 설	1,774	1,774	7.4			
	유 회 시 설	1,174	1,174	4.9			
	교 양 시 설	6,111	6,111	25.5	111.28	2,111.28	1동/ 공연장부속실, 막구조물
	편 익 시 설	7,094	7,094	29.6			
	공원관리시설	2,493	2,493	10.4	291.86	291.86	2동/ 관리사무소
녹지 및 기타		431.6	431.6	1.8			

2. 세부시설 결정

가. 세부시설 결정표

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3,966.6			
1.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4,889.0			
기정		도 로	오현리735-2	1,630.0			
기정	1-1	진입광장	오현리735-2	1,989.0			
기정	1-2	행사광장	오현리735-2	1,270.0			
2 조경시설							
기정	소 계			1,774.0			
기정	2-1	경관작물원	오현리735-1	1,774.0			
3. 유희시설							
기정	소 계			1,174.0			
기정	3-1	어린이놀이터	오현리735-2	1,174.0			
4. 교양시설							
기정	소 계			6,111.0	2,111.28	2,111.28	
기정	4-1	다목적공연장	오현리736-1	6,111.0	111.28	111.28	1동/공연장부 속실
변경	4-1	다목적공연장	오현리736-1	6,111.0	2,111.28	2,111.28	1동/공연장부 속실, 막구조물
5. 편익시설							
기정	소 계			7,094.0			
기정	5-1	웰컴마당	오현리733	3,044.0			
기정	5-2	팝업플라자	오현리763-1	4,050.0			
6. 공원관리시설							
기정	소 계			2,493.0	291.86	291.86	
기정	6-1	관리사무소	오현리736-1	2,493.0	291.86	291.86	2동/ 관리사무소, 다용도시설
변경	6-1	관리사무소	오현리736-1	2,493.0	291.86	291.86	2동/ 관리사무소
7. 기 타							
기정	소 계			431.6			
기정		녹 지	오현리735-2	431.6			

나. 도로 결정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합 계		2개 노선		440.0	1,630.0				
기정	소로	3	1	5~6	153.0	764.0	연결로	구역계 (735-2답)	행사광장 (735-2답)	
기정	소로	3	2	3	287.0	866.0	연결로	소로 3-1 (736-1답)	소로 3-1 (735-2답)	

【붙임2】 의견서

의견제출서

사업명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사업장위치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992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영주시장	
공람기간	2024. 08. 12. ~ 2024. 09. 02.	
의견제출자	<input type="checkbox"/> 소유자 <input type="checkbox"/> 관계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해당사항에 √)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민등록상 현주소)	연락처
의견		

202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문경시 공고 제2024-1261호

문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문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12.

문 경 시 장

1.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4. 8. 12. ~ 2024. 9. 2.

나. 공람장소 : 문경시청 도시과, 마성면 행정복지센터

2. 공람내용

가. 문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다. 계획의 개요

- 1) 사 업 명 :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
- 2) 위 치 :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산2-10번지 일원
- 3) 면 적 : 32,251㎡

3.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문경시 홈페이지(<https://www.gbmg.go.kr>)에 요약본 게재, 환경영영향평가 시스템(www.eiass.go.kr)에 전문 게재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도시과(☎054-550-6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국립산림레포츠 진흥센터 특정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산2-10 일원	-	증)32,251	32,25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1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산2-10 일원	32,251	마성면 하내리 일대에 국립산림레포츠 진흥센터 조성에 따른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 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32,251	100.0	
교육연구시설용지	23,813	73.8	
녹지용지	8,438	26.2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교육연구시설용지	면적 : 23,813㎡	특정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을 위하여 교육연구시설 용지 신설
녹지용지	면적 : 8,438㎡	특정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녹지용지 신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합 계		32,251	-	-	32,251	
A	A	32,251	1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산2-10	23,813	교육연구시설용지
			2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산2-10	5,943	녹지용지
			3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산2-10	2,495	녹지용지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육연구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	A1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교육 연구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형태 및 배치	◦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권장		
		건축재료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권장		
		색채	◦ 강한 원색은 지양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건축물 색채 권장		

의성군 공고 제2024 - 1162호

의성 군계획시설(도로, 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의성군 옥산면 오류리 산48-13번지 일원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2일

의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의성군 옥산면 오류리 산48-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군계획시설(도로, 전기공급설비)

나. 명칭 :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가. 시설결정면적 : 236,170㎡ (변경없음)

나. 사업시행면적 : 236,170㎡ (변경없음)

구 분	전체현황	편입행정구역	편입면적(㎡)	비고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 면적 : 172,048㎡ ◦ 전기공급설비 - 면적 : 64,122㎡ 	의성군 옥산면 오류리, 금학리, 실업리, 감계리, 전흥리, 사곡면 매곡리 일원	236,170	

다. 사업의 규모 : 기정 - 건축면적 390㎡, 연면적 673.12㎡, 지상2층 →

 변경 - 건축면적 364㎡, 연면적 351.72㎡, 지상1층

라. 도로면적 : 172,048㎡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면적(㎡)	비고
합계						172,048	
1	소로3-1	6	1,683	매곡리 산2-3	실업리 산93-18	46,027	
2	소로3-2	4	3,431	실업리 산93-7	감계리 산27-2	65,163	
3	소로3-3	4	2,496	실업리 산119-7	금학리 산66-18	49,132	
4	소로3-4	4	448	오류리 산48	오류리 산44-20	10,537	
5	소로3-5	4	72	오류리 산44-19	오류리 산44-19	1,022	
6	소로3-6	4	14	실업리 산93-9	실업리 산93-9	167	

마. 전기공급설비 면적 : 64,122㎡ (변경없음)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64,122	
1	발전시설1	오류리 산58-15	4,191	
2	발전시설2	오류리 산58-12	2,447	
3	발전시설3	실업리 산93-17	3,010	
4	발전시설4	실업리 산93-13	4,116	
5	발전시설5	실업리 산93-10	4,911	
6	발전시설6	전흥리 산104-4	4,095	
7	발전시설7	전흥리 산109-4	3,213	
8	발전시설8	실업리 산145-10	3,138	
9	발전시설9	감계리 산8-7	3,649	
10	발전시설10	감계리 산38-1	3,563	
11	발전시설11	전흥리 산104-7	3,406	
12	발전시설12	오류리 산48	3,370	
13	발전시설13	오류리 산44-17	4,249	
14	발전시설14	오류리 산44-13	5,685	
15	발전시설15	금학리 산66-19	4,393	
16	발전시설16	오류리 산44-23	3,503	
17	변전시설	오류리 산57-7	3,18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의성황학산풍력발전 주식회사 최석규

나.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2층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2년 9월 29일 ~ 2027년 6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7.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의성군청 도시환경국 농촌활력과

가. 열람기간 : 2024. 8. 12. ~ 2024. 8. 28. (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 의성군청 도시환경국 농촌활력과

다. 관계서류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8. 의견서 제출

가. 본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열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도시환경국 농촌활력과

(☎054-830-6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주소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읍면	리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8필지					236,170	236,170					
1	사곡면	매곡리	산2-3	임	1,108	1,108	공유지.	의성군			
2	사곡면	매곡리	산2-4	임	839	839	공유지	의성군			
3	사곡면	매곡리	산6-7	임	1,328	1,328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4	사곡면	매곡리	산6-8	임	303	303	공유지	의성군			
5	옥산면	오류리	732-7	전	1,090	1,090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6	옥산면	오류리	732-8	전	162	162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7	옥산면	오류리	산44-11	임	81	81	공유지	의성군			
8	옥산면	오류리	산44-24	임	52	52	공유지	의성군			
9	옥산면	오류리	산44-25	임	197	197	공유지	의성군			
10	옥산면	오류리	산44-26	임	5	5	공유지	의성군			
11	옥산면	오류리	산44-13	임	5,685	5,685	공유지	의성군			
12	옥산면	오류리	산44-14	임	1	1	공유지	의성군			
13	옥산면	오류리	산44-15	임	12,481	12,481	공유지	의성군			
14	옥산면	오류리	산44-17	임	4,238	4,238	공유지	의성군			
15	옥산면	오류리	산44-18	임	92	92	공유지	의성군			
16	옥산면	오류리	산44-19	임	1,022	1,022	공유지	의성군			
17	옥산면	오류리	산44-20	임	3,785	3,785	공유지	의성군			

번호	주소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읍면	리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8	옥산면	오류리	산44-21	임	1	1	공유지	의성군			
19	옥산면	오류리	산44-28	임	5	5	공유지	의성군			
20	옥산면	오류리	산44-23	임	1,542	1,542	공유지	의성군			
21	옥산면	오류리	산48-4	임	4,696	4,696	공유지	의성군			
22	옥산면	오류리	산48-5	임	53	53	공유지	의성군			
23	옥산면	오류리	산48-6	임	127	127	공유지	의성군			
24	옥산면	오류리	산48-8	임	1,730	1,730	공유지	의성군			
25	옥산면	오류리	산48-9	임	4,244	4,244	공유지	의성군			
26	옥산면	오류리	산48-11	임	2,007	2,007	공유지	의성군			
27	옥산면	오류리	산48-13	임	14,331	14,331	공유지	의성군			
28	옥산면	오류리	산48-16	임	3,370	3,370	공유지	의성군			
29	옥산면	오류리	산48-18	임	10	10	공유지	의성군			
30	옥산면	오류리	산48-19	임	4,473	4,473	공유지	의성군			
31	옥산면	오류리	산48-20	임	6	6	공유지	의성군			
32	옥산면	오류리	산48-21	임	1,558	1,558	공유지	의성군			
33	옥산면	오류리	산48-22	임	1,961	1,961	공유지	의성군			
34	옥산면	오류리	산48-23	임	13	13	공유지	의성군			
35	옥산면	오류리	산48-24	임	20	20	공유지	의성군			
36	옥산면	오류리	산48-25	임	46	46	공유지	의성군			
37	옥산면	오류리	산48-26	임	50	50	공유지	의성군			

번호	주소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읍면	리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8	옥산면	오류리	산48-27	임	68	68	공유지	의성군			
39	옥산면	오류리	산48-28	임	57	57	공유지	의성군			
40	옥산면	오류리	산48-29	임	49	49	공유지	의성군			
41	옥산면	오류리	산48-30	임	46	46	공유지	의성군			
42	옥산면	오류리	산48-31	임	51	51	공유지	의성군			
43	옥산면	오류리	산48-32	임	37	37	공유지	의성군			
44	옥산면	오류리	산48-33	임	46	46	공유지	의성군			
45	옥산면	오류리	산48-34	임	64	64	공유지	의성군			
46	옥산면	오류리	산48-35	임	1	1	공유지	의성군			
47	옥산면	오류리	산51	임	396	396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48	옥산면	오류리	산51-1	임	1	1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49	옥산면	오류리	산52-1	임	240	240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50	옥산면	오류리	산55-8	임	32	32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51	옥산면	오류리	산55-4	임	4,207	4,207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52	옥산면	오류리	산55-5	임	97	97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53	옥산면	오류리	산55-6	임	822	822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54	옥산면	오류리	산55-7	임	135	135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55	옥산면	오류리	산57-2	임	19	19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56	옥산면	오류리	산57-3	임	128	128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57	옥산면	오류리	산57-4	임	13	13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번호	주소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읍면	리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8	옥산면	오류리	산57-5	임	877	877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59	옥산면	오류리	산57-6	임	441	441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60	옥산면	오류리	산57-7	임	2,160	2,160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61	옥산면	오류리	산58-4	임	726	726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62	옥산면	오류리	산58-5	임	18	18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63	옥산면	오류리	산58-6	임	39	39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64	옥산면	오류리	산58-7	임	50	50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65	옥산면	오류리	산58-8	임	15	15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66	옥산면	오류리	산58-9	임	8,303	8,303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67	옥산면	오류리	산58-10	임	153	153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68	옥산면	오류리	산58-18	임	169	169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69	옥산면	오류리	산58-12	임	2,447	2,447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70	옥산면	오류리	산58-19	임	157	157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71	옥산면	오류리	산58-20	임	27	27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72	옥산면	오류리	산58-15	임	4,130	4,130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73	옥산면	오류리	산58-16	임	55	55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74	옥산면	오류리	산60-2	임	54	54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75	옥산면	오류리	산103-40	임	72	72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76	옥산면	오류리	산103-41	임	51	51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77	옥산면	오류리	산103-34	임	2,745	2,745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번호	주소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읍면	리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8	옥산면	오류리	산103-35	임	1,398	1,398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79	옥산면	오류리	산103-37	임	3,447	3,447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80	옥산면	오류리	산103-42	임	182	182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81	옥산면	오류리	산103-39	임	113	113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82	옥산면	오류리	산104-1	임	7,925	7,925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83	옥산면	오류리	산106-8	임	261	261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84	옥산면	오류리	산106-9	임	84	84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85	옥산면	금학리	산66-21	임	46	46	공유지	의성군			
86	옥산면	금학리	산66-18	임	1,686	1,686	공유지	의성군			
87	옥산면	금학리	산66-19	임	4,075	4,075	공유지	의성군			
88	옥산면	금학리	산67-1	임	4,937	4,937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89	옥산면	금학리	산67-3	임	237	237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90	옥산면	실업리	2-5	전	27	27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91	옥산면	실업리	2-6	전	47	47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92	옥산면	실업리	2-7	전	178	178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93	옥산면	실업리	2-2	전	33	33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94	옥산면	실업리	2-3	전	572	572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95	옥산면	실업리	2-4	전	4	4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96	옥산면	실업리	7-2	전	1,471	1,471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97	옥산면	실업리	7-3	전	143	143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번호	주소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읍면	리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8	옥산면	실업리	산65-18	임	355	355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99	옥산면	실업리	산65-19	임	35	35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00	옥산면	실업리	산65-20	임	18	18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01	옥산면	실업리	산65-21	임	48	48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02	옥산면	실업리	산65-22	임	135	135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03	옥산면	실업리	산65-23	임	74	74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04	옥산면	실업리	산65-15	임	1,780	1,780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05	옥산면	실업리	산65-16	임	3	3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06	옥산면	실업리	산65-24	임	216	216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07	옥산면	실업리	산65-10	임	665	665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08	옥산면	실업리	산65-11	임	64	64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09	옥산면	실업리	산65-12	임	1	1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10	옥산면	실업리	산65-13	임	2,385	2,385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11	옥산면	실업리	산69-5	구	12	12	국유지	국토교통부			
112	옥산면	실업리	산69-4	구	76	76	국유지	국토교통부			
113	옥산면	실업리	산83-6	임	430	430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14	옥산면	실업리	산83-1	임	6,404	6,404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15	옥산면	실업리	산83-2	임	305	305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16	옥산면	실업리	산83-3	임	258	258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17	옥산면	실업리	산93-19	임	53	53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번호	주소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읍면	리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8	옥산면	실업리	산93-20	임	48	48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19	옥산면	실업리	산93-21	임	75	75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20	옥산면	실업리	산93-7	임	13,909	13,909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21	옥산면	실업리	산93-9	임	167	167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22	옥산면	실업리	산93-10	임	3,954	3,954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23	옥산면	실업리	산93-13	임	3,969	3,969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24	옥산면	실업리	산93-23	임	46	46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25	옥산면	실업리	산93-17	임	1,828	1,828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26	옥산면	실업리	산93-18	임	362	362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27	옥산면	실업리	산119-8	임	51	51	공유지	의성군			
128	옥산면	실업리	산119-3	임	1,495	1,495	공유지	의성군			
129	옥산면	실업리	산119-6	임	1,990	1,990	공유지	의성군			
130	옥산면	실업리	산119-7	임	68	68	공유지	의성군			
131	옥산면	실업리	산121	임	184	184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32	옥산면	실업리	산121-1	임	114	114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33	옥산면	실업리	산122-3	임	925	925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34	옥산면	실업리	산122-4	임	322	322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35	옥산면	실업리	산122-5	임	236	236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36	옥산면	실업리	산122-7	임	1,592	1,592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37	옥산면	실업리	산122-9	임	7,257	7,257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번호	주소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읍면	리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8	옥산면	실업리	산145-15	임	38	38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39	옥산면	실업리	산145-16	임	228	228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40	옥산면	실업리	산145-17	임	49	49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41	옥산면	실업리	산145-18	임	46	46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42	옥산면	실업리	산145-8	임	9,561	9,561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43	옥산면	실업리	산145-19	임	134	134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44	옥산면	실업리	산145-20	임	30	30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45	옥산면	실업리	산145-10	임	3,138	3,138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46	옥산면	실업리	산145-11	임	14	14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47	옥산면	실업리	산145-12	임	2,003	2,003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48	옥산면	실업리	산145-14	임	355	355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49	옥산면	감계리	산8-9	임	45	45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50	옥산면	감계리	산8-10	임	34	34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51	옥산면	감계리	산8-6	임	2,398	2,398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52	옥산면	감계리	산8-7	임	3,649	3,649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53	옥산면	감계리	산27-4	임	269	269	공유지	의성군			
154	옥산면	감계리	산27-5	임	43	43	공유지	의성군			
155	옥산면	감계리	산27-1	임	219	219	공유지	의성군			
156	옥산면	감계리	산27-2	임	8,560	8,560	공유지	의성군			
157	옥산면	감계리	산27-7	임	248	248	공유지	의성군			

번호	주소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읍면	리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8	옥산면	감계리	산27-8	임	87	87	공유지	의성군			
159	옥산면	감계리	산37-1	임	1,395	1,395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60	옥산면	감계리	산37-3	임	1	1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61	옥산면	감계리	산38-1	임	1,949	1,949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의성황학산풍력 발전주식회사			
162	옥산면	전흥리	산104-14	임	53	53	공유지	의성군			
163	옥산면	전흥리	산104-15	임	40	40	공유지	의성군			
164	옥산면	전흥리	산104-16	임	43	43	공유지	의성군			
165	옥산면	전흥리	산104-1	임	24	24	공유지	의성군			
166	옥산면	전흥리	산104-3	임	5,050	5,050	공유지	의성군			
167	옥산면	전흥리	산104-4	임	2,365	2,365	공유지	의성군			
168	옥산면	전흥리	산104-6	임	2,213	2,213	공유지	의성군			
169	옥산면	전흥리	산104-7	임	1,399	1,399	공유지	의성군			
170	옥산면	전흥리	산104-8	임	1,805	1,805	공유지	의성군			
171	옥산면	전흥리	산104-9	임	12	12	공유지	의성군			
172	옥산면	전흥리	산104-10	임	133	133	공유지	의성군			
173	옥산면	전흥리	산104-11	임	1,135	1,135	공유지	의성군			
174	옥산면	전흥리	산104-12	임	255	255	공유지	의성군			
175	옥산면	전흥리	산104-13	임	3	3	공유지	의성군			
176	옥산면	전흥리	산109-5	임	32	32	공유지	의성군			
177	옥산면	전흥리	산109-2	임	4,314	4,314	공유지	의성군			
178	옥산면	전흥리	산109-4	임	2,116	2,116	공유지	의성군			

영양군 공고 제2024-622호

영양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1번지 일원의 영양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2일

영 양 군 수

1. 사업의 종류와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 명 칭 :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 사업의 위치(변경없음)

-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1번지 일원

3. 사업의 규모

- 사업면적 : (기정)171,754m² → (변경)163,250m²(감8,504m²)
- 변경사유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에 따른 사업면적 조정

4. 사업기간

- (기정)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7년 5월 31일까지
(변경)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7년 12월 31일까지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주)에이더블유피 대표 김 동 휘
- 주 소 :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96, 에이동 402호

6. 열람 및 의견청취

- 기 간 : 2024. 8. 12. ~ 2024. 8. 27.
- 장 소 : 영양군청 지역개발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 계			22,905,320	171,754 163,250						
1	영양읍 무창리	산1	임	11,032,526	101,816	국 (산림청)	-				
2	영양읍 기산리	산11-1	임	4,360,796	24,185	국 (산림청)	-				
3	영양읍 기산리	산6-1	임	1,564,458	11,141	국 (산림청)	-				
4	영양읍 기산리	산6-3	임	4,959	374	영양군	-				
5	영양읍 부하리	산12	임	1,342,185	24,301 19,093	국 (산림청)	-				면적 조정
6	수비면 송하리	산76	임	4,600,396	9,937	국 (산림청)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

(054-680-63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서류 및 도면은 영양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성주군 공고 제2024-845호


공인 폐기 공고

성주군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8. 12.

성 주 군 수

- 공인 폐기 및 등록 사유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조례 폐지(2023. 12. 21)에 따른 미사용
- 공인 폐기 및 등록일 : 2024년 8월 1일
- 폐기 및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공 인 명	규격 및 서체	인 영
폐 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성주군 분임출납명령관의인	2.0cm 정방형 소전체	

성주군 공고 제2024-847호



공인 등록 공고

성주군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8. 12.

성 주 군 수

- 공인 등록 사유 : 성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성주군치매안심센터 업무용 사용
- 공인 폐기 및 등록일 : 2024년 8월 8일
- 폐기 및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공 인 명	규격 및 서체	인 영
등 록	성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인	2.1cm 정방형 훈민정음체	
	성주군치매안심센터장인	2.1cm 정방형 훈민정음체	



기 타

고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43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2일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장

하천의 명칭	금호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장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주남1길 39-7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109번지 일원 면적 : 8,470㎡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주남취입보 설치(농업용수 사용) ○ 연장사유 :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기간연장 ○ 시설개요 : - 가동보 L=161.5m - 고정보 L=89.4m - 어도 2개소(B=7.1m, L=70.2m) - 배사문 1개소(1.8m × 2.0m)
점 용 기 간	당초 : 2019년 09월 01일부터 2024년 08월 31일까지 변경 : 2024년 09월 01일부터 2029년 08월 31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4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2일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칠곡군수(새마을체육과장)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1688-1번지 외 2필지 일원 면적 : 20,504㎡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포남야구장 조성 ○ 시설개요 : - 포장 : 인조잔디 A=8,580m ² , 마사토 A=878.9m ² , 야자매트 L=40m - 배수 : 수로관(300C) L=688m, 유공관(D100) L=1,880m - 시설 : 본부석(이동식) 2개소, 덕아웃(이동식) 4개소, 관중석(이동식) 4개소, 화장실(이동식) 1개소, 불펜 2개소, 휠스(H10m) L=110m, 휠스(H1m) L=328m, 파울폴 2개소 - 상수 : PE수도관(D25mm) L=358m, 포장복구 10m ²
점 용 기 간	2024년 08월 08일부터 2029년 08월 07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43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2일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고령군(관광진흥과)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969번지 외 3필지 일원 면적 : 340,500㎡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바래미 생태레저단지 조성 ○ 시설개요 : - 상수공 : PE수도관(25mm) 148m, PE수도관(50mm) 6m, 공기 변실 1개소, 지수벨스 2개소 - 오수공 : 내충격PVC관(D200) 64m, 내충격PVC관(D50) 90m, 맨홀펌프장 1개소, 오수맨홀 4개소, 환기구 61m - 배수공 : 토사측구 1,094m, 파형강관 128m, 집수정 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공 : 야자매트 2,934m, 화강석경계석 1,855m, 인조화강석 블럭 6,247㎡, 흙콘크리트포장 6,375㎡, 마사토포장 22,670㎡, 쇠석포장 12,948㎡, 자연석판석포장 75㎡ - 시설물공 : 관찰테크 1개소, 전망대 1개소, 파고라 2개소, 돌 벤치 25개소, 통나무벤치 42개소, 벤치 33개소, 피크닉테이블 12개소, 앉음벽 1개소, 스카시입간판 1개소, 이동식화장실 2개소, 관리초소 1개소, 안내판 17개소, 식생호안블럭 330㎡ - 식재공 : 양버들 22주, 왕벚나무 53주, 팽나무 2주, 상록철쭉 4,000주, 황금사철 11,600주, 개나리 3,500주, 노랑말채나무 3,400주, 황매화 6,300주, 파종 44,820㎡
점 용 기 간	2024년 08월 09일부터 2029년 08월 08일까지



기 타

지 시 사 항

도지사 지시사항

- 2024. 8. 6.(화) 확대 간부회의 시 -

관리번호	지 시 내 용	담당부서 (협조부서)
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우·폭염 등 재난 대비, APEC·행정통합 준비 등 각종 현안 대응에 직원 노고 격려 - 전 직원 자유로운 하계휴가 통해 재충전 기회 가질 것 ○ ‘청림이 곧 보물’이라는 청백리 김계행* 선생의 정신을 본받아 전 직원 청림 문화 실천할 것 * 조선 전기 문신, 안동시 길안면에 선생이 만년을 보낸 만휴정과 선생을 봉향하는 묵계서원이 있음 	전부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韓세상